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박사학위논문

# 반려동물 장묘행정에 관한 연구

-장묘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eral Administration of
Companion Animal
-Focused on Funeral Industry-

2021년 6월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 영 근

## 반려동물 장묘행정에 관한 연구

-장묘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uneral Administration of Companion Animal

-Focused on Funeral Industry-

지도교수 임 헌 만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 영 근 2021년 6월

# 정영근의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함 정영근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배재대학교 대학원

## 반려동물 장묘행정에 관한 연구 -장묘업을 중심으로-

#### 정 영 근

### 지도교수 임 헌 만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 연구는 반려동물의 양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후 처리 실태와 합법적, 합리적 처리라 할 수 있는 동물장묘업을 중심 분석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후처리 전반에 대한 장묘행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장묘업 현황 분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56개의 사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의 등록 현황과 영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업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 즉, 장묘행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 인식실태, 법적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법 정책,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 관련 구체적인 행정관리와 규제,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산업관리 등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장묘행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과정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사후(死後) 대부분은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버려지거나 매장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후 사체 관리부실, 무단투기 및 불법 매립 횡행, 그리고 이로인한 환경오염과 종량제 봉투로의 폐기물 처리 문제, 동물 장례 방법 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현실이다. 반려동물 장묘업 등록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혐오 시설 기피 현상에 의해 갈수록 장묘업 등록이 용이한 지역으로 몰려 화장시설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장묘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으며 동물병원을 상대로 한 홍보에서도 과도한 소개비(리베이트)가 동물장묘업에서 점차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동물장묘업이 자칫 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일부 업체는 등록상 영업이 아니라 동물장묘업의 실질적인 업무인 동물화장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반려동물 장묘업체 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이동식 화장로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반려동물 장묘행정 분석 결과에 따라 그 개선과제를 장묘 정책 차원, 행정 관리적 차원 및 법규정비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묘 정책 차원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설 동물장묘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준공영제(準公營制)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불법 동물 장묘시설에대한 규제 정책을 엄격히 하여 제도권 내의 동물장묘업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동물장묘업 산업이 과도한 상업화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장묘행정관리 차원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장묘시설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다.

둘째,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셋째, 늘어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를 고려하여 반려 동물장묘 전문인

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1명이 동물보호·복지업무를 담당하거나 타업무와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급증하는 동물장묘 수요에 대응하여 전담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장묘업의 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규정비 차워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장묘 업체에서의 '화장증명서' 발급과 '등록말소'업무대행 법 제화를 하여야 한다.

둘째,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취급자에 따라 이원적 규제가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 동물 사체의 인도적 처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법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장묘와 장묘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동물장묘업 실태에 대한 포괄적 분석으로 장묘행정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반려동물의 급증과 그에 따른 장묘의 부정적 실태를 개선하고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반려동물, 동물사체처리, 동물장묘업, 장묘행정, 준공영제,

##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iv
표 목 차vi
그림목차 ······ix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반려동물 장묘행정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제1절 반려동물의 개념적 고찰
1. 반려동물의 정의
2. 동물복지의 현대적 동향1
3. 반려동물의 지위12
제2절 반려동물 일반현황18
1. 반려동물 양육현황

2. 반려동물 등록현황21
제3절 반려동물 장례 절차와 행정24
1. 반려동물 장례 절차와 주요외국 사례 24
2. 반려동물 장묘행정과 담당 행정기관26
제4절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 현황과 사체처리33
1. 미국33
2. 프랑스35
3 독일37
4 일본37
5. 중국40
제5절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체계44
1. 반려동물 장묘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44
2. 이 연구의 분석체계48
제3장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 분석50
제1절 반려동물 장묘업 일반현황50
1. 반려동물 사후처리 실태와 장묘업50
2. 동물 장묘업체 일반현황54

제2절 반려동물 장묘업 설립유형(공설/사설) 실태 분석61
1. 사설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61
2. 공설 반려동물 장묘업 추진 분석63
제3절 동물 장묘시설 설치 관련 소송 및 갈등사례69
1. 용인 씨엘로펫69
2. 논산 리멤버파크69
3. 옥천 마므레 스카이펫70
4. 전주 하늘71
5. 양평 로이힐즈72
제4절 반려동물 장묘업 불법 실태 분석75
1. 등록업체의 불법 화장장 운영 실태75
2.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장장 운영 실태75
3. 이동식 화장로 불법운영 실태76
제5절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 분석결과 종합80
제4장 반려동물 장묘행정 현황 분석84
제1절 반려동물 장묘의 사회문화적 인식 실태84
1. 반려동물 장묘에 대한 인식실태84
2.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실태

3. 반려동물 장묘 인식실태의 시사점 89
제2절 동물장묘업 행정관리와 행정규제91
1.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필요성91
2. 동물장묘업 행정의 현황과 과제94
3. 동물장묘업 행정관리와 규제97
제3절 반려동물 장묘에 관한 법 정책 고찰114
1. 동물복지와 장묘에 관한 법 정책114
2.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관련 법규 고찰116
제4절 반려동물 장묘산업관리120
1. 반려동물산업 현황120
2. 장묘산업의 발달과정122
제5절 반려동물 장묘행정 분석결과 종합129
제5장 결론 및 제언132
【참고문헌】 ····································
[Abstract]140

## 【표 목 차】

<丑 2-1>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현황19
<班 2-2>	최근 5개년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주요 결과 22
<班 2-3>	반려동물 장례절차25
<班 2-4>	동물보호센터 현황32
<班 3-1>	반려동물 사망통계(추정치)50
<班 3-2>	·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실태 ······52
<班 3-3>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55
<班 3-4>	국내 반려동물 장묘업체 현황58
<班 3-5>	동물장묘업 현황61
<班 4-1>	동물장례에 대한 인식 분포85
<班 4-2>	반려동물 장례의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요인87
<班 4-3>	19대 대선 반려동물 관련 주요 공약93
<班 4-4>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110
<班 4-5>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현황111
<斑 4-6>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현황111
<班 4-7>	법규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처리 절차117
<班 4-8>	1세대 동물장묘 업체 분포표124

## 【그림목차】

<그림	1-1>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 전망4
<그림	2-1>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 비율(%)18
<그림	2-2>	반려동물 양육현황 (양육자 기준)19
<그림	2-3>	반려동물 양육현황 (성별, 연령별)20
<그림	2-4>	연도별 반려견 등록 비율(%)22
<그림	2-5>	반려동물 장례절차25
<그림	2-6>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29
<그림	2-7>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30
<그림	2-8>	미국 반려동물 수
<그림	2-9>	중국의 도시인구 선호동물 분석도42
<그림	2-10>	› 반려동물 장묘행정 분석의 틀 ·······49
<그림	3-1>	연간 반려동물 사체 발생량과 처리용량(농림축산식품부) … 50
<그림	3-2>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계획
<그림	3-3>	임실 오수의 개66
<그림	3-4>	전라북도 임실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망도67
<그림	3-5>	오수 공설 장묘시설67
<그림	4-1>	반려동물 장묘업 영업등록신청서 처리절차103
<그림	4-2>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 추정치121
<그림	4-3>	1인 가구 수 추이127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가지 동물을 한정하고 있지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질적으로 붕어 등 어패류와 조류, 고슴도치 같은 작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에 국민 5천 명을 표본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1,319명으로 조사대상의 26.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었으며, 이를 가구 수로 환산하면 전국 2,238만가구 중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 조사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가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려동물은 내가 가족처럼 사랑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실질적으로 가족과 동일한 존재임에도 사후(死後) 사체처리는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람은 사망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이나 매장의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분묘를 조성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사후(死後)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민법상 물건(物件)의 지위에 처한다.2)

국내에서 이러한 동물의 지위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후 사체처리에 있어서 생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기도 하고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신고 등록된 동물장묘 업체를 이용하여 화장이나 건조장의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연평균 사망이 68.8만 마리이고 화장 4.2만 마리, 기타 매장 등 64.6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 산식품부의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망 시

<sup>1) 2021. 4. 23.</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발표

<sup>2)</sup>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현행법상 법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은 제759조에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을 점유나 소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제252조 제 3항에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飼養)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 면 무주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소유에 속한 동물의 경우 민법상 재 산권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해나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과에 해당한다.

처리계획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59.9%, 주거지·야산 매립 24.0%, 동물병원에서 처리 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 1.7%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반려동물이 사후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버려지거나 매장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반려인들은 법률적인 지식의 부재나 비용의 문제로 야산이나 아파트 화단에 몰래 매장하는 사례도 아직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매스미디어의 홍보및 텔레비전의 반려동물 관련 방송의 영향으로 불법매장은 해마다 많이 감소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하였을 때는 최소한 화장만이라도 진행해 주려는 반려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국내인구는 통계청 집계 51,839,953명이고, 2019년도 사망자집계는 295,132명이었다. 이들 사망자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1,121개 장례식장중 한 곳을 이용하였으며 매장이 아닌 경우 전국 60개의 화장시설을 통해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또는 묘지시설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국 약 1,500만 마리가량으로 추산되는 반려동물의 경우 사후 사체를 전국 56개의 반려동물 장묘시설<sup>3)</sup>에서 처리하고 있다. 반려동물 중 대표 동물인 개(pet)는 평균 수명을 15년 전후(前後)로 보고 있으며, 점차 늘고 있는 사람의 수명을 90세로 기준으로 하면 6분의 1을 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람은 사망하였을 때 90% 이상이 전국 60개의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고 반려동물은 전국 56개의 동물전용 장묘시설에서 화장이나 건조장 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람의 화장시설에 비해 적은 숫자가 아니다. 다만 56개의 동물장묘 시설이 반려동물의 분포도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신고등록이 용이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동물장묘 시설은 건축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심의위에서 일단 부결되어 사실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 대부분이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동물장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역적 님비현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사는 곳 주변에 동물장묘 시설이 들어

<sup>3) 2021. 4. 21.</sup>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동물장묘업체는 56 개소가 있다(www.animal.go.kr).

서는 것을 극대로 꺼리며 민원을 제기해 생기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56개 동물장묘 시설 중 경기도 광주시와 김포시, 경남 김해시 등 입지조 건이 동물장묘 시설이 들어설 만한 곳은 동물장묘 시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서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이에 일부 동물장묘 업체는 그 시설 유지가 어려운 업 체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정작 동물장묘 시설이 필요한 전국 광역시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도 높지만 입지 조건이 까다로 워 동물장묘 시설이 전무(全無)하여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偏重) 현상을 보이는 것은 동물장묘 시설이 들어서기 위한 입지 조건 등이 까다로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들어서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님비현상의 극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도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거세게 제기(提起)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둘러싼 소송전(訴訟戰)을 통과해서 들어선 반려동물 장묘업체의 수가 최근 5년 이내 배(倍) 이상 급증하였으며, 농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5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현재도 전국적으로 5~6개 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보통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동물장묘업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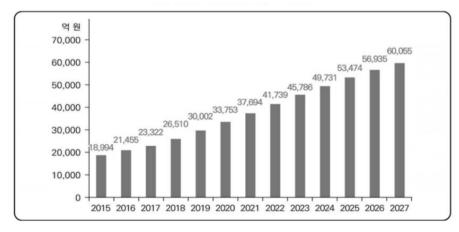
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창원시에서 폐쇄된 화장장을 보수하여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시설을 준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임실군과 경상남도 김해시가반려동물 공설화장장 시설을 추진하였으나 전라북도 임실군에서는 오수면에 동물 화장로 3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은 완공하였으나 아직 동물장묘 시설의 운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부지도 확정하지 못한상태에서 사업이 표류하자 2019년 5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부지 선정을 위해 유치희망 마을을 공모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사설(私設)이든 공설(公設)이든 지역주민들의 극한 님비

현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사설 장묘시설은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주민들과의 합의가 무산되면 소송의 단계를 거쳐 설치조건에 부합되면 들어설 수 있지만, 공설 장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그다음 단계인 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기가 매우부담스러운 사업이다. 사업 자체가 동물복지와 주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서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소송이라는 극한 갈등을 선택할 경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민선 자치단체장이 감내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반려동물 장묘와 장묘업의 실태는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시급하고도 마땅히 개선돼야 할 국면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9년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91조 6천억 원대에 이르렀으며 소동물 시장중에서 조류인 '앵무새 시장'이 1조 원대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4)

향후 국내 반려동물 산업도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아울러 반려동물 장례 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 물 산업 시장규모를 2015년도 1조9천억 2021년도 3조7천억 원 2027년에 6조 원 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1).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1>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 전망

<sup>4)</sup> 내외 경제 TV "앵무새 시장, 성장 가도 위 반려동물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까?" 2020. 5. 3.

많은 각 전문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인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은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 이후에도 유망한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속화 되고 있는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펫콕족'의 증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등 경제산업 전반의 비대면 활동 강화 등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반려동물산업 성장세는 보다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스카이데일리, 2020. 6. 6.). 향후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

향후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을 합법적, 합리적, 생산적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정부는 장묘 시장이 과도한 상업화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의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반려동물의 장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국내에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관련 연구가 전무하여, 수요예측 및 반려동물 장례 관련 정책수립 근거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황규성 외, 2015). 반려동물 장묘업을 초점으로 하는 선행연구들도 매우 희귀한 실정에 있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이상에서의 논의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동물장묘업을 중심 분석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후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즉, 동물장묘업을 중심으로 장묘행정(공공의 반려 동물장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활동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반려동물 장묘와 장묘업의 부정적 실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익하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반려동물의 장묘와 장묘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현재의 법률적, 행정적 제도와 정부의 역할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 시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장묘업 현황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 정식 신고등록을 마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56개의 사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의 등록 현황과 영업의 형태분석 그리고 일부 영업 군만 신고등록을 하고 동물 화장은 불법으 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다.

이어 반려동물 설치기준과 현재 3개의 영업 군으로 이루어진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이나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봉안시설<sup>5)</sup> 등에 대한 운용상의 실질적 문제를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처음부터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동물 불법 장묘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화장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의 실태와 문제점을고찰하고 연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장묘업 현황 분석에 이어 다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업과 관련된 정부의

<sup>5)</sup> 동물보호법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범위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 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sup>1.</sup>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 "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전용의 봉안시설

활동 즉, 장묘행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 인식실태, 법적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법 정책,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 관련 구체적인 행정관리와 규제,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산업관리등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장묘행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 2. 연구의 방법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지만 관련된 선행연구가 적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이고 선구적으로 반려동물 장묘행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의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 자료와 관련 법률 및 관련 부서의 보도 자료와 학술연구 자료 등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 을 대상으로 하는 장묘행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리멤 버파크의 상담 자료를 통해 얻어진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반려인들의 장례 형 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물장묘 시설의 근간이 되는 모법인 동물보호법 의 문제점과 절차적 문제점 그리고 사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에 관한 문 제와 공설 장묘시설 설치 운용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으 며 또한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지역의 동물장묘 업의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 제2장 반려동물 장묘행정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 제1절 반려동물의 개념적 고찰

#### 1. 반려동물의 정의

선사시대부터 인간과 동물은 관계를 맺어 왔으며 동물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동 수단과 노동력 제공 및 종교적, 정신적 신념의 대상으로 인간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산업화 및 개인주의화로 인한 정서적 결핍의 증가 및 인간우위의 사고에 대한 반성 등과 같은 시대적 변화로 동물을 정서적 교류의 대상 혹은 반려자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이서윤, 2009). 또한, 반려동물은 감정적인 애착의 대상으로서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Turner, 2001; 이현서, 2017). 인간과 동물은 정서적 관계에서 물질적으로 이득을 주는 기능적, 실용적인 목적을 떠나서 사람과 삶을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동반자적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이도경, 2020).

반려동물(伴侶動物)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개, 고양이, 새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20).

1980년대까지는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animal)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왔으나, 이를 대체하는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The Human-Pet relationship(인간과 반려동물과의관계)'이라는 국제심포지엄에서 Lorentz가 처음으로 명명하여 일반화되었다(지향희, 2015; 최시영·윤귀향, 2018).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83년 10월 27일~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움에서 동물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onrad K. Lorenz가 주창하였다.

Konrad K. Lorenz는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그 자리에서 개. 고양이. 조류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하였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장난감을 연상시키고 소유

의 의미를 내포하는 '애완동물'이란 용어를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반려동물로 개칭한 것이다.

애완동물은 인간의 소유와 오락에 대한 의미가 강조된 개념으로서 옆에 두고 만지면서 귀여워할 수 있는 동물이란 의미를 내포한다(김영미, 2008).

그러나 반려동물은 함께 생활하거나 교감을 나누는 가족, 친구라는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미국, 독일, 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현재 반려 동물이 일반용어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6) 이에 따라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 중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7)

2007년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이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sup>8)</sup> 제2조 1의3<sup>9)</sup>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sup>10)</sup>에 의하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가지 동물

<sup>6)</sup>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up>1. &</sup>quot;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sup>1</sup>의2., 1의3., 2., 3., 3의2., 4., 5. (생략)

<sup>7)</sup> 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6호]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sup>8)</sup>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물보호법 제1조).

<sup>9)</sup>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up>1.. 1</sup>의2.(생략)

<sup>1</sup>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sup>2., 3., 3</sup>의2., 4., 5. (생략)

<sup>10)</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을 말한다. 특히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며 반응하는 '개'는 반려동물의 여러 종(species)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species) 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대부분은 반려동물에게 이름을 붙여 주고 보살펴 주면서 단순히 많은 동물 중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함께 여생을 보낸다'라는 특별한 관계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자 애인 역할, 친구 등과 같은 동일시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도경, 2020).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동물상의 영업<sup>11)</sup>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축산법」 상의 "가축"인 소, 말, 닭 등도 반려동물로 사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대상인 동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해당 영업에 있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게 된다.

동물보호법 제32조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에 의해 동물장묘업은 동물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로 분류12)되는데 예컨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마뱀이나 앵무새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던사람이 해당 도마뱀이나 앵무새가 죽은 후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르

<sup>11)</sup>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sup>1.</sup>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sup>2.</sup> 동물판매업

<sup>3.</sup> 동물수입업

<sup>4.</sup> 동물생산업

<sup>5.</sup> 동물전시업

<sup>6.</sup> 동물위탁관리업

<sup>7.</sup> 동물미용업

<sup>8.</sup>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sup>12)</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sup>1.</sup>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sup>2~8. (</sup>생략)

고 동물전용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수는 있겠으나 규제 혹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관련 법령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려(伴侶)"라는 개념자체에 이미 주체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대상으로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장은혜, 2017).

#### 2. 동물복지의 현대적 동향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는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가 제안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i)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ii) 불쾌감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iii)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and disease), (iv)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r), (v)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13)

미국 수의학협회는 "동물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영양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라고 정의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대체로 동물복지란 동물 주거환경 및 영양 상태 보장, 동물 학대 방지, 동물보건 유지 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김순양, 2018).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를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것"(농림축산식품부, 2011)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동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정의에 머무르고 있다.

<sup>13)</sup>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farm-animal-we lfare-committee-fawc) 최종확인 2021. 5. 31

국내에서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물보호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보호할 때에는 첫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셋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셋째,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할 것, 다섯째,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 5대 원칙은 협소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주로동물 학대 방지를 통한 동물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4년 영국의 Harrison이 Animal Machines라는 저서에서 동물 학대 실태를 고발하면 서부터이다. 이는 현대적 동물복지 운동을 촉발하여 EU는 1978년 농장 동물보호를 위한 이사회 결정을 채택하였다(우병준, 2014). 이후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의 대상을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법은 물론 연차행동계획, 동물복지지침, 사육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농장 동물의 경우도 축종별로 규정과 지침을 두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 제도나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동물복지를 윤리적 소비 운동과결합하며, 무역협정에서도 동물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3. 반려동물의 지위

#### 1) 민법상 지위

국내의 반려동물의 지위는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대물(代物)'의 존재이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物件)의 한 유형이다. 민법에 따르면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고(민법 제98조), 물건을 다시 부동산(不動産)과 동산(動産)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99조)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박정기, 2010; 25~26). 따라서 생명이 있는 개도, 로봇 개도

법률상 물건으로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하여 동물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로 인한 타인의 손해 발생 시 동물의 점유자에게 그 책임을 지움으로써 동물 자체의 보호 규정이라기보다는 동물의 고유 위험, 즉 이성에의하여 제어되지 않는 자위적·본능적 행동에 유래하는 위협을 갖고 있어 이러한 위험물을 사실상 점유하는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송진영, 2017; 13-14).

#### 2) 형법 및 동물보호법상 지위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동물은 물건으로 여긴다. 따라서 타인의 동물에게 상처를 주거나 학대행위 시,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sup>14)</sup>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의무가 강화되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에이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 (1) 맹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부터 맹견의 보호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sup>15)</sup>, 이를 위반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sup>14)</sup> 동물보호법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up>15)</sup>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6)

#### (2) 맹견 관리교육 이수

맹견의 보호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본 교육은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할 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3) 맹견의 관리

- ① 맹견의 보호자는 보호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맹견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②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또는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동물보호법의 성격은 반려동물 중 맹견은 형법상의 '기타 위

<sup>16)</sup>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제6조의2(보험의 가입) 법 제 13조의2제4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sup>1.</sup>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sup>2.</sup> 지급보험금액은 실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sup>3.</sup>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 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본조신설 2021, 2, 9.]

험한 물건'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으로는 반려동물의 지위는 이분법으로 나뉘는 대상 즉 인간 대 비인간의 지위로 나눈다고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아닌 것은 모두 물건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의 지위는 물건이며 사고 시 대물(代物)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 3) 주요 외국에서의 지위

#### (1) 독일에서의 반려동물의 지위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선진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 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keine Sachen)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고, 이는 동물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伴侶)의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독일 민법 제90조a 제1문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종래의 물건 개념을 변경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정한 입법자의 취지는 물건과 동물에 형식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물은 인간에 대하여 보호 및 배려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동료이고, 고통을느끼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동물보호법의 사상을 민법에서도 표현했다.

#### (2) 프랑스에서의 반려동물의 지위

프랑스도 독일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이론상으로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 니라 오히려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프랑스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4년 전면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전에서 동물학대죄의 편별(編別)상의위치를 크게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동물학대죄를 '재산에 대한 죄'라고 하는 분류에서 제외하여, '신체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 '국가·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와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그 외의 죄'라고 하는 제3의 분류를 만들어 그 속에 넣게 되었다. 동물학대죄와 함께 같은 분류에 포함된 것은 인간의 장기에 관한 범죄'와 '인간의배아에 관한 범죄'로 이것은 프랑스 형법상의 동물의 지위가 단순한 물건으로부터 인간의 범주에 크게 다가갔음을 알 수 있다(박정기, 2010;51(3), 26-36).

#### 4) 국내 반려동물의 지위 검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지만,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되므로 타인에 의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시,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반려동물의 가격과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추산된다. 자신 소유의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때도 반려인의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어 강제 분리가 불가능하며, 반려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시 반려동물도 사유재산으로 간주 돼 압류 대상이 된다. 동물 학대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어렵사리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되는 사례도 아직 이어지고 있다.

바람직하게 2021년 3월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물이 사유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면서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을 일반 물건 과 구분해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 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21, 03, 11.).

국내 반려동물의 지위는 사람 대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동물에게는 대인, 대물, 기타라는 또 다른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법 적용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것은 2016년 1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이전에는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여기어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페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려인들이 자신들의 반려 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어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설치 승인서' 조항을 폐지하여 동물장 묘업에서의 반려동물의 지위를 승격시킨 사례를 적용하여 반려동물의 지위를 '제3의 지위'로 유연하게 두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반려동물 일반현황

#### 1. 반려동물 양육현황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sup>17)</sup>결과를 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해마다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다순 비교는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이다.



<그림 2-1>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 비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04, 23, 보도자료

위 그림처럼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비율을 보면 조사대상자가 2천 명일 때와 3천 명일 때 그리고 5천 명일 때 또 조사방식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2010년도와 2020년도의 추이 동향을 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7.7%에서 10년 만에 27.7%로 상향되

<sup>17)</sup> 농림축산식품부「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sup>△</sup>조사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

<sup>△</sup>설문문항: 75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sup>△</sup>조사기간 및 방법: 2020.10.7.~10.23., 온라인 패널조사

<sup>△</sup>표본오차: 95%(±1.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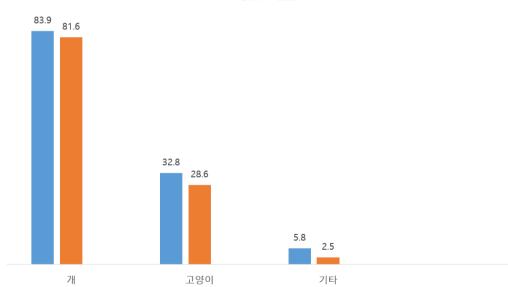
었으며 이는 사회적인 경제성장이 지속하면서 1인 가구의 증가와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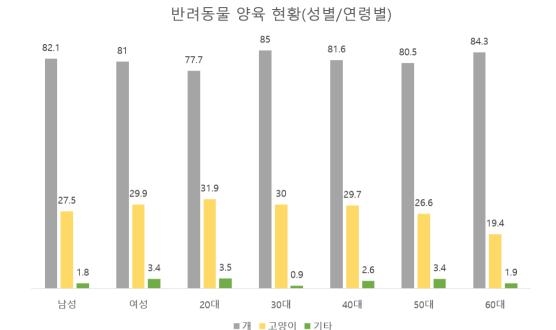
년도	양육가구수	개	고양이
2015	457	513	190
2017	593	662	233
2018	511	507	128
2019	591	598	258
2020	638	602	258

반려동물 양육 현황(종류별)





<그림 2-2> 반려동물 양육현황(종류별: 양육자기준)+



<그림 2-3> 반려동물 양육현황(성별, 연령별)

< 포 2-1>과 <그림 2-2>,<그림 2-3>를 보면 반려동물 중에는 개(pet)를 양육하는 인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양이를 양육하는 인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는 개를 키우는 인구가 고양이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현황에서의 남녀 성비 분석을 보면 상호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 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못하였으며 연령별 추이 분석에서도 20대부터 60대까지 상호 비슷한 양육 상태를 보여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반려동물 종류별 양육현황을 살펴본 바, 2020년도 개를 양육하는 반려인이 81.6%이고 고양이를 양육하는 반려인이 28.6% 이외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2.5%의 소수에 그쳤다.

조사결과로 미루어 보면 향후 몇 년간은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에서 분양시장의 대부분은 개와 고양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미국의 반려동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조류인 앵무새나 펠릿같은 소동물의 반려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반려동물 시장에서는 미미한 동향을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 반려동물 등록현황

동물 등록제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 동물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동물복지 관련 인식 수준이 높고, 동물등록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지인배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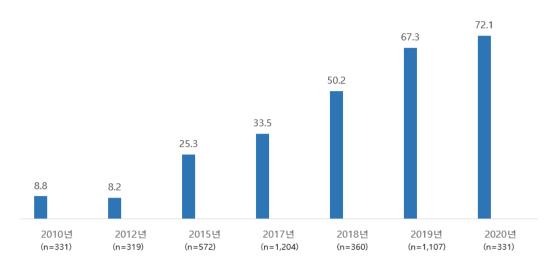
우리나라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통한 공중보건향상,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최아라·구혜경, 2020). 이는 2008년에 도입되어, 2013년에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어 등록이 의무화 되었다 18).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한다.19)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반려동물 등록 현황이 8.8%에 그쳤으나 전년도인 2020년도에는 반려견 소유자 72.1%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sup>18)</sup>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소유자의 인적사항, 반려견의 이름, 성별, 품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하여야 한다(최아라·구혜경, 2020). 이상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총 3,690개소(동물병원 3,420개소, 동물보호센터 169개소, 동물판매업소 90개소, 동물보호단체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 92.7%, 동물보호센터가 4.6%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sup>19)</sup> 동물보호법 제2조 2호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그림 2-4> 연도별 반려견 등록 비율(%)

< 그림 2-4 >를 보면 2018년 이후로 반려동물 등록률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꾸준히 홍보한 결과로 추정된다.

<표 2-2> 최근 5개년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주요 결과

구분		2015	2017	2018	2019	2020	
조사방식		3천 명 전화조사	5천 명 전화조사	2천 명 면접조사	5천 명 온라인조사	5천 명 온라인조사	
	양육 기	가구 비율	21.8%	28.1%	23.7%	26.4%	27.7%
전국환산 양육 가구			457만	593만	511만	591만	638만
개	가구당 : 수	평균 양육 마릿	1.28	1.30	1.30	1.21	1.16
ЭΠ	전국환신 수	· 총 양육 마릿	513만	662만	507만	598만	602만
고	가구당 <del>[</del> 수	명균 양육 마릿	1.74	1.75	1.50	1.34	1.42
양 이	전국환산 총 양육 마릿 수		190만	233만	128만	258만	258만
동물등록 여부 비율		25.3%	33.5%	50.2%	67.3%	72.1%	
		지인 간 거래	_	63.7%	61.0%	61.9%	69.1%
입	양경로	펫숍		21.3%	31.3%	23.2%	24.2%
		보호시설	_	4.8%	3.7%	9.0%	4.8%
동물 학대 목격 시 신고한다		12.2%	_	_	45.0%	53.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4. 23. 보도 자료

<= <표2-2>를 보면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의 거래를 통해 입양 받아 양육하는 빈도가 해마다 60% 이상으로 조사되어 반려인들은 낯선 공간에서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반려동물을 입양 받기보다는 반려동물의 어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입양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행사는 견주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묵인해주는 성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습득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은 처벌의 대상이 됨이 널리 알려졌다.

이에 그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2015년도의 경우에는 신고하겠다는 반려인들이 15%에 불과하였으나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절반이 넘는 53.4%가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하여국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선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 문화중 아쉽게 느껴진 것은 혈통주의를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 혈통도 확인할 수 없는 보호시설에서의 입양은 5%대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은연중 사람의 혈통주의가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유추할수 있다. 그리고 반려인들 중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개를 키우는 반려인에 비해 해마다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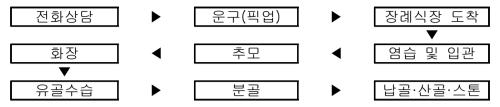
# 제3절 반려동물 장례절차와 행정

# 1. 반려동물 장례절차와 주요외국 사례

# 1) 반려동물 장례절차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죽음 또한 증가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처리 및 장묘에 대한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황규성 외, 2015). 반려동물의 장례절차에 대하여 정부가 표준 또는 어떠한 형식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 일반에서 장묘업체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장례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시영·윤귀향, 2018).

- (1) 전화 상담: 대부분 전화로 반려인과 장묘 업체 간 장례절차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이때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운구할 경우 보호자 역할, 화장 가능 시간과 거리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 (2) 운구(픽업): 반려동물 운구함에 정중히 담아 운구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반려동물 사체를 장묘업체로 운구한다.
  - (3) 진행 상담: 장례 진행을 위해 장례용품 등을 선택하고 신청한다.
- (4) 염습 및 입관: 반려동물 사체를 정성스럽게 닦고 수의를 입힌 후 관에 넣는다(보호자의 선택유무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 (5) 추모의 시간: 보호자의 종교에 따라 추모 용품을 배치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 (6) 화장: 화장로로 이동하여 화장을 시작한다.
  - (7) 유골수습: 화장이 종료되면 냉각 후 유골을 수습한다.
  - (8) 분골: 수습된 유골을 분골기로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든다.
- (9) 화장 후 절차: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골함에 담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스톤제작 또는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그림 2-5> 반려동물 장례절차

※ 자료: 최시영·윤귀향(2018), pp.197-198.

<표 2-3> 반려동물 장례절차 관련 용어

용어	해설
운구	화장을 하기 위하여 영구를 운반하는 행위
영구	시신(사체)가 들어있는 관
수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염습	시신(사체)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일
입관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일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분	화장한 유골을 분골기로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드는 행위
수의	시신(사체)에게 입히는 옷
유골함	화장한 유골을 담는 함으로 재질은 도자기, 황토, 옥수수
πεο	전분, 나무, 종이 등 다양
Ⅴ ㅌ(Hf 거 柗)	화장한 유골을 고온의 열을 가해 녹여 구슬이나 작은 돌 형
스톤(반려석) 	태로 만든 것
납골당(봉안당)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안치하는 곳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 묻거나 뿌리는 친환경 장례방식
산골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산골시설에 뿌리는 장법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문을 수목·화초·잔디 증의 밑이나 주변에
N L O	묻어 장사하는 것

※ 자료: 최시영·윤귀향(2018), pp.197-198.

# 2) 주요외국의 반려동물 장례사례

주요외국의 반려동물 장례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우리의 현재 상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는 데 유용하다. 우리나라와 유사 한 유교문화권의 중국과 일본은 반려동물의 장례식이나 추도의 의식이 있다(최 시영·윤귀향, 2018). 중국에서는 종종 고가의 비용을 들어가는 장례식이 언론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며, 한 자녀 정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며 가족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장례가 많아질 것으로 관련 서비스나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일본은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있고 로봇 강아지 장례식까지 등장하였으며, 반려동물 사후 장례 휴가, 반려동물 사망 이전 보호자 사망 대비 보험도 인기 있다. 일본은 추도식, 화장, 납골당 등 유리와 유사한 면이 많으며, 반려동물 납골당이 도심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반려동물 장례 관련 상품이 매우다양하고 세련된 아이디어상품이 많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시영·윤귀향, 2018).

# 2. 반려동물 장묘행정과 담당 행정기관

#### 1) 반려동물 장묘행정의 정의

장례(葬禮)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는 장사(葬事)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사람의 경우 장사 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 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법률 제17203호]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동물, 나아가 반려동물의 장례 등에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죽은 사람에 적용되는 장례를 참고하면 반려동물 장례란 '죽은 반려동물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는 장사(葬事)를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예식'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사법과 같이 동물나아가 반려동물의 장례 등에 적용되는 명확한 제도적 규정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물보호법 등에서 장사를 지내고 장묘(葬墓)와 관련하여 장묘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반려동물 장묘에 관한 개념 도출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의 제1호20)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리할 때, 동물장묘란 동물전용의 장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물전용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동물장묘업이란 이러한 동물장묘를 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행정을 정의하면 '반려동물의 장묘와 관련된 정부의활동'을 의미한다. 위의 동물장묘 정의를 포함하면, 반려동물 장묘행정이란 '반려동물의 장례,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물전용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에 대한정부의 활동'이다.

최근에 행정의 범주는 정부(government)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연결된 개방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확장되었다(이종수 외, 2019). 이 관점에서 반려동물 장묘행정을 정의하면 '공공의반려동물 장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활동 및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반려동물 장묘행정은 공익을 지향하여 공공의 반려동물 장묘 문제 해결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장묘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지칭할 때 장묘행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죽은 반려동물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일을 말하는 장사(葬事)를 지내는일 또는 그런 예식을 지칭할 경우 반려동물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반려동물 장묘행정 담당기관

<sup>20)</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 개정]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sup>1.</sup>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전용의 봉안시설

우리나라 정부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련한 업무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의 농산· 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조직은 장관을 정점으로 1차관 1차관보 2실 5국 8관 52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령 운용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 행정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증기준 고시 및 정책 집행을 담당하며, 축산과학원은 인증기준과 시범농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 반려동물 장묘행정 관련 업무기관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1차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 생명 정책관 산하의동물복지정책과이다.<sup>21)</sup>

이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보호·복지업무, 동물보호법운영, 동물복지 축산인증,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관리,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산업업무 등을 담당 하고 있다.

<sup>21)</sup> 반려동물 장묘 관련 행정업무는 식품산업정책실의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79호] 제15조(식품산업 정책실) 제3항 49.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그림 2-6>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mafra/437/subview. do)

보다 직접적인 반려동물 장묘와 관련한 행정업무추진기관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79호] 제20조).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장묘행정을 주관하는 곳은 이 기관의 동물 질병 관리부장 산하 동물 보호과이다. 이

동물 보호과는 동물 보호·복지업무, 반려동물 보호제도 운영, 농장 동물 복지제도 운영, 동물시험제도 및 동물보호법령 제·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2-7>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도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intro/org/qia\_org.jsp)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

에서 1명이 동물보호·복지업무를 담당하거나 타업무와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다 (문운경·이승환, 2017).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부서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논산시의 경우 시장, 부시장 밑에 4실 3국 28과를 두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이중 동고동락국 축수산과의 가축 방역 분야 '동물보호 및 동물판매업·장묘업 신고 및 관리' 담당 공무원 1명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제22조). 따라서 동물보호센터는 반려동물 장묘 행정을 일부 수행하는 곳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5조).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총 280개소로 지역별 분포비율을 보면 경기 19.2%, 서울 9.3%, 대구·경북 8.5%, 전북, 전남 8.2% 순이다. 이 동물보호센터는 13만 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운영 비용은 26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보호센터(280개소)의 운영 형태별로는 민간위탁(위탁 보호, 228개소), 지자체 직영(47개소), 시설위탁(5개소)순이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표 2-4> 동물 보호센터 현황

	=1.7"		운영형태			운영현황			
구분	합계	백분율	시·군	<u> </u>	위탁	운영인	평균보호	<u>。</u> 운영비용***	
	(개소)		직영	위탁*	보호**	력(명)	기간(일)	(만원)	
계	280	100%	47	5	228	1,086	27	2,671,951	
서울	26	9.3%	1	1	25	74	15	151,191	
부산	5	2%	-	-	5	27	19	78,579	
대구	24	8.5%	_		24	66	13	91,220	
인천	12	4.3%	-	-	12	32	16	89,764	
광주	1	0.4%	-	1	_	12	17	70,000	
대전	1	0.4%	1	_	_	25	19	123,504	
울산	18	6.4%	_	_	18	62	22	40,765	
세종	1	0.3%	_	_	1	2	30	10,222	
경기	54	19.2%	7 (도직영2포함)	_	47	376	20	684,067	
강원	19	6.8%	8	_	11	84	29	170,723	
충북	11	4%	2	1	8	36	24	112,181	
충남	16	5.7%	_	2	14	46	27	189,064	
전북	23	8.2%	2	_	21	87	23	164,545	
전남	23	8.2%	8	_	15	55	30	145,414	
경북	24	8.5%	7	1	16	53	28	189,849	
경남	21	7.5%	10	_	11	35	29	294,265	
제주	1	0.3%	1	_	_	14	20	66,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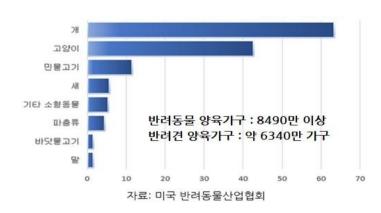
(단위 : 개소)

- \* 시설위탁은 시군구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임대·운영하는 형태
- \*\* 위탁 보호는 동물병원 등 민간업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
- \*\*\* 연간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구조에 필요한 시설 비, 인건비, 위탁비 등 전반 비용을 포함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제4절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 현황과 사체처리

#### 1. 미국

미국반려동물산업협회(APPA,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에 따르면 전체 미국 가구의 67%에 해당하는 8,490만 이상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그중, 6340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으며, 반려동물 중에서 '개'의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양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약 4300만 가구였으며 다음이 민물고기를 기르는 가정이 약 1200만 가구이다. 미국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8년 연속 증가해 2019년 기준 약 753억 달러(약 91조 6천억 원)에 달한다.22)



<그림 2-8> 미국 반려동물 수 (단위: 백만 마리)

현재 미국에서 18세에서 24세의 인구 중 76%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모든 미국 가정의 약 65%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동물과 관련한 법은 연방 차원에서 1996년에 최초로 제정한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의 「동물복지법」과 「동물복지규정」이 있다. 그러나 「동물복지법」과 「동물복지규정」이 있다. 그러나 「동물복지법」과 「동물복지규정」에는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은 연방 차원에서보다 주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대표적인 주법으로는 일리노이주의 「반려동물화장법」, 뉴욕주의

<sup>22)</sup> 데일리벳, 2020. 4. 17.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켈리포니아 주의 「보건 및 안전법」 중 제6장의 동물 화장 규정, 버지니아주의 「웨스트퍼블리싱 주해 버지니아 법규집」등이 있다(장은혜, 2015).

# 1)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주는 「웨스트퍼블리싱 주해 버지니아 법규집」 제57관 종교적이고 관용적인 문제들, 제3장 묘지, 제8절 동물 묘지 규정에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의 조항에서 "반려동물 묘지"란 반려동물 사체의 지상 또는 지하 매장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예약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 게 제공된 토지와 그에 부속된 구조물, 시설 또는 건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 어있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연장인 매장이 합법임을 밝히고 있다.

반려동물의 묘지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순회법원 사무국장에게 반려동물 묘지 토지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토지는 반려동물 묘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 2)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의 「보건 및 안전법」 중 제6장의 "동물 화장"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1985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사무국장이나 기록관의 공 증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반려동물의 묘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

토지전용 신청서에는 묘지의 사용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묘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반려동물을 매장한 이후부터는 매장비용과 함께 유지관리비가 청구된다.

# 3) 일리노이 주

일리노이 주의 「반려동물 화장법」(Companion Animal Act)은 유기물인 반

려동물의 사체만을 처리(화장)할 경우 환경보호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여 「반려동물 화장법」의 정의에 명시된 반려동물만을 화장하는 동물화장장은 환경청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 4) 뉴욕 주

뉴욕 주의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에서는 반려동물의 종류를 개,고양이,설치류,어류,뱀,거북이,도마뱀,개구리,토끼 등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고 길들여진 애완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운영세칙에는 "반려동물 묘지"(Pet cemetery)는 이윤추구와는 상관없이 수의사나 일반 대중들의 이용을 위한 예약, 반려동물 사체의 지상 또는 지하 영구매장이나 납골당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유료로 제공하는 토지, 공간, 구조 물, 시설, 또는 건물을 말한다.

뉴욕주에서는 「반려동물 묘지 및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세칙」에 의거 반려 동물 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1993년 7월 31일 이후 동 운영세칙에 따른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유료 반려동물 묘지 또는 반려동물 화장장사업을 할 수 있다. 뉴욕에는 120년이 넘은 유서 깊은 동물묘지인 하츠데일 동물묘지는 2012년 동물묘지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립사적지"(NRHP)로 선정되었으며 뉴욕주는 2016년 9월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동매장을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하츠데일 동물묘지"에는 주인 700여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묻혀 있으며 미국에는 이러한 동물묘지가 800여 개가 있다.<sup>23)</sup>

#### 2. 프랑스

프랑스 농업법전은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사무는 행정의 책임으로 수행하여 야 하는 '공역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공공시설과 공역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물 사체처리에 관

<sup>23)</sup> 네이버 "하츠데일 동물묘지" 최종검색:2021.6.7

한 공역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지방정부에서는 동물 사체를 무료로 화장 처리해 주었지만 비용 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자 법령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는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 가량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을 양육할 때부터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동물 숫자만큼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지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여 이러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동물소각시설 또는 동물화장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왕승혜, 2015).

프랑스에는 사설 장묘시설과 공설 장묘시설로 나누어져 운영하고 있는데 사설 장묘시설은 주로 부유층(장례비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름)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렴한 공설 장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처리방법은 크게 화장, 매장, 박제로 나뉘는데 화장의경우 개별화장이나 집단화장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장의 경우 자신의 소유지에 매장하는 방법과 동물묘지에 매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자신의 토지에매장할 경우 사체의 무게가 40kg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타인 소유의 정원이나토지에서 일정한 거리가 이격되어야 하며 깊이는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 주거지 또는 수원지에서 35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동물묘지는 또다시 사설묘지와 공설묘지로 나뉘는데 공설묘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반려동물 주인의 의사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이슈화되고 있다.

리옹에서 사업을 기획한 '르네상스(Renaissance)'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장 절차를 따로 지켜볼 수 있고 사립묘지나 납골당에 반려동물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통 화장비용은 180유로(한화 약 21만 7,000원)이며 납골당 안치엔 2,500유로(한화 약 30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높은 비용 때문에 매달 4유로(한화 약 5000원)를 내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기도 한다.

위 회사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외에 반려동물 기념일 이벤트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생일에 다른 반려동물을 함께 불러 파티를 만들어 주는 컨셉이다. 프랑스는 위와 같은 장례 서비스에 따라 사설장례장 뿐만 아니라 공공장례장도 운영하고 있다.

# 3 독일

독일의 경우에 반려동물 장례식은 보편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장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120개의 동물묘지가 있고 180명의 동물장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고양이나 작은 강아지의 화장비용은 200~300유로이며 묘지 비용은 125유로, 관리비용은 1년에 75유로이다. 독일 등 반려동물 선진국은 동물세를 시행하고 있다. 베를린 일간지 <더 로컬>에 따르면 베를린의 강아지 세수입은 한 해 약 1100만 유로(140억 원) 에 달한다고 한다.<sup>24)</sup>

#### 4 일본

일본의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동물 취급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저촉되는 업종은 판매, 보관(반려견 호텔), 대여(영화촬영, 모델 등 대여업), 훈련, 전시(동물원, 수족관)업이 있다.

일본의 '사람의 사체' 규정에는 사람의 사체에 대한 장례를 집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인.허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영구차 등을 사용하여 사체를 반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화물사업자 운송사업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 동물 사체의 처리에 있어서도 그 사무를 취급처리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현실이다.

동물의 사체처리에 관련된 규정인 동물 애호 관리법 제36조에서는 제1항 '공 공장소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자는 소유자로 판명된 자 또는 도도부현 지 사에게 통보하도록 힘써야 한다. '2항에서는' 도도부현은 통보가 있었던 때에는 그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사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사체 규정 조문이 있다. 그 러나 이 '동물의 사체' 규정은 동물의 사체가 공공장소에 방치됨으로써 그 장소 를 이용하는 국민의 동물 애호에 관련된 감정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다.25)

일본은 애완동물 장례 호칭이 자리 매김을 했는데 동물 묘원, 애완동물 장례,

<sup>24)</sup> 출처 : 김태호,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2019. 1. 30.

<sup>25)</sup> 농림축산식품부(2016).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화장, 공양 등 다양한 호칭이 있다. 애완동물 장례식은 사망 후 화장에 이르기 까지를 말하는데, 화장과 수골, 묘지와 봉안당, 화장장, 관리동 등의 시설, 사망후 죽음을 애도하는 일련의 정신적 행위인 독경 등의 일련의 행위가 자리매김한다. 즉 동물의 장례, 화장, 묘지, 공양 4가지를 총칭하여 반려동물 장례라고한다.

일본의 일반인의 개, 고양이 등의 장례, 화장, 봉안, 공양을 맡는 사업은 1945년대 초반에 도쿄 후츄시의 사원 동물 묘원에서 열린 것이 최초의 사업이다. 이후 1945년 후반에 도쿄와 카나가와 등에서 종교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동물 묘원이 사업을 시작하고, 1955년 전후에 간 사이에서도 민간의 동물 묘원이사업을 시작하였다. 1965년대에는 나고야 지역, 1975년 전후에는 홋카이도, 호쿠리쿠, 교토, 큐슈, 칸토 지구 등에서 일부 사원 경영 및 민간경영의 동물 묘원 동물 장의사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전국에 약 800개 이상의 동물 묘원 장의사가 존재한다. 일본의 동물의 장례식에도 각 가정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례식이 있다. 동물의 장례식에 관해서는 가족들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그 뜻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개별화장을 할 것인지, 합동 화장을 할 것인지, 장례식 제단을 원하는지 여부도 가족들에게 확인을 하고 시간・비용・공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동물의 장례식이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동물과의이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물의 장례뿐만 아니라 인간의 장례식 전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며, 동물의 상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동물과의 이별에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동물의 장례는 죽은 동물을 공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겨진 동물 보호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장과 행동 등도 항상 정중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일본의 동물장례식장 직원들의 상주 응대 예절은 철저하며 동물을 상실한 반려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이라도 참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끔 응대를 한다(日本動物葬儀靈園協會, 2017).

또한, 반려동물의 죽음을 기리며 사후에 함께 묻히고자 하는 반려인이 늘고 있다. 일본의 일부 행정구역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장묘가 허용되어 많은 일본 의 반려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장례문화 전문 온라인매체 '이이소기'에 따르면, 일본에선 사후에 반려동물과 함께 묻힐 수 있는 민간 공원묘지가 많아지고 있다. 먼저 떠난 반 려동물과 같은 무덤에 잠들기를 바라는 반려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 공원묘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묻힐 수 있다"는 규약을 정해져 있다. 비석에 반려동물의 이름과 사진, 메시지를 새겨 넣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형태를 딴 묘비 제작도 가능하다. 유골함에 들어있는 상태라면 어떤 반려동물이든 종에 대한 제약이 없고, 다른 납골당에서 가져온 유골함도 비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유골만 먼저 납골할 수도 있다. 물론 동물과 같은 묘지를 쓰는 것이 불쾌한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 공원묘지의 일부 구역만 '반려동물 가능 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본에선 종교관이나 위생 관념상 사람과 동물의 유골을 함께 매장하기 위해서는 묘지 관리자인 절이나 지역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후쿠오카 등 10개 도와 현에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묘지가 마련돼 있다.

세타가야 펫 장례식장은 불교 반려인들이 장례, 납골, 매장, 공양 등을 할 수 있는 장례식장으로 견주들의 위패와 비석도 함께 안장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인간의 현대 화장은 1948년 묘지 매장법이 제정된 이후에 버너연소기기를 사용하여, 60% 정도였던 일본의 화장률이 점차 상승하고, 1980년에는 90%, 2008년에는 99.9%로 세계 제일의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동물 주인들도 인간과 같은 장송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생기게 됨으로써 동물도 매장에서 화장 중심의 장례가 생기게 되었다. 1953년경 도쿄 시내의 민간동물 묘원이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을 한 것이 일본의 가족 동물 화장의 시작이다. 그 후 1955년에 관동과 관서에 두 세 곳의 민간 동물 묘원에 의한 화장이 이루어지고 1975년 초기에는 개와 고양이 사체 화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에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와 민간 동물 묘원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1979년 개와 고양이 등의 사체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다고 행정적으로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해수, 2019).

또한 일본에서는 승합차량과 소형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화장차량이 성업 중 인데 이는 반려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거부감이 없는 문화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의 법감정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평가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잠들 수 있는 수목장도 증가하고 있다. 정해진 구획에 유골을 매장하고 묘비 대신 나무를 심는 방식의 수목장은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정한 사람과 함께 잠들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제격이라고 한다. 또 돌로 만든 묘지보다 약 5분의 1 정도로 저렴해 인기가 있다.

이 밖에도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발달한 일본에는 반려동물 장묘 및 장례문화 관련 업체와 상품들이 많다. 직접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도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화장차가 방문해 사망한 반려동물의 화장 및 장례의식을 치르기 도 하는데, 차체 뒷부분에 마련된 세리머니실에서 장례의식을 거행하며 반려동 물과 작별인사를 하고, 앞부분에 장착된 화장 소각로에서는 화장을 진행한다.

나가노 현에 있는 유리 공방 '라 폼'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골로 목걸이나 귀걸이를 제작하거나 유전자(DNA)를 추출하고 구슬에 넣어 펜던트를 만든다. 오사카 시의 '레이세키' 공방에서는 반려동물의 모습 그대로 본떠 도자기 유골함을 만들어 준다.<sup>26)</sup>

#### 5. 중국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로모니터 (Euromonitor)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9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3년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1억5000만 마리를 넘어섰고, 반려동물 시장은 9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등록해야 하지만 많은 중국인이 등록 없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어 실제 중국의 애완동물 수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을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반려동물 장묘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사후 화장을 했으나 최근 사후 장례방식으로 화장·매장·수상장·박

<sup>26)</sup> 김서로 한국일보(2017.7.4)., '반려동물과 같은 묘지에 잠들다' 최종검색 2021.5.4

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례 서비스 가격은 100위안에서 1500위안까지 다양하며, 동물의 뼈와 보석으로 만드는 메모리얼 스톤은 8000위안에서 4만 위안에 달하지만 비싼 가격에도 반려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최근 10년이래 베이징 창핑(昌平), 따싱(大興) 등 교외 지역에 반려동물 전용묘지가 형성됐으며, 베이징의 한 전용묘지는 3000개의 묘지가 마련돼 있으나 반 이상의 자리가 찼고, 매년 300마리에서 400마리의 개, 고양이, 열대어, 거북이, 산양 등다양한 동물이 안치된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 돼 죽은 애완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며, 관련 사항 위반 시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영토가 넓고 반려동물 등록제도 유명무실한 이유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중국에서 매년 처리해야 하는 애완동물 시체는 1000만 마리 이상이며, 이는 환경문제와 직결돼 중국 정부는 해외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 시 한국에서는 주로 봉안당이나 수목장 안치가 이루어지지만, 중국은 주로 묘지 안치가 이루어지는 등 분명한 장례문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보다 중국의 반려동물 장례용품 가격이 비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한국보다 더 많다.

중국의 반려동물 장묘업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와 2 인 미만 가구의 증가, 반려동물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 또한 깊어지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의 반려동물 장묘업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무한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아직 관련 규제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 으므로 진출 시 관련 규정 등의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반려동물산업은 사람들의 경제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산업으로, 흔히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중국이 도농 간 빈부격차가 큰 것을 고려해 대도시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에는 청도에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섰으며, 24시간 현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체 이동 서비스 차를 갖추고 있다. 반려동물 가족이 사체를 미용하고 슬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방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연간 동물 사망률에 비해 이용 비율은 여전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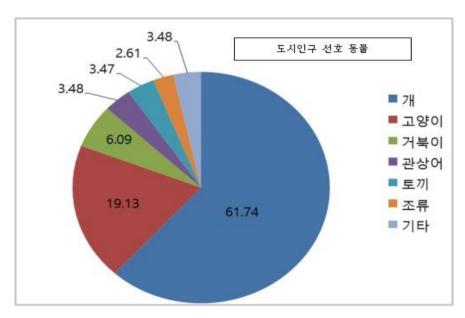
청도는 1년에 약 4,000마리의 개가 죽지만 화장 이용률은 10% 미만이고, 수천 마리의 개가 사적(私的)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준다.

중국은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아 보호자가 데리고 오면 반려동물 화장 전에 반려동물 가족과 반려동물 화장장 직원이 계약을 한다. 서비스 방법을 확인하 고 특정 서비스에 서명을 한다.

계약서 서명 후 사체를 소독 후 몸을 닦고 머리를 단정하게 만져 주는 등 메이크업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 후 마무리가 되면 반려동물과 최종적으로 이별을 위한 추모식장으로 가는데 이 방에서 반려동물의 주인과 반려동물이 마지막 추모식을 할 수 있다.

국은 반려견은 꽃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관에 뉘어졌으며, 옷을 입은 채 인형에 둘러싸였습니다. 이어 100만 위안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고급 차량에운구돼 화장터로 옮겨졌다. 이 같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최소 500위안 (약 9만 원) ~ 최대 9000위안 (약 165만 원)이라고 한다.27)

중국의 반려견은 총 2740만 마리로 미국 5530만 마리, 브라질 3570만 마리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중국의 반려묘는 5810만 마리로 미국 8060만 마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0> 중국의 도시인구 선호동물 분석도 자료: 天涯社區(천애사구)

<sup>27) [</sup>출처]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해외 반려동물 장례 문화|작성자 이별 이야기

또한 위의 분석도 처럼 거북이는 도시인구 선호동물 3번째 나타나며, 이는 6.09%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상어 선호도는 3.48%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평균 15.6% 성장률에 생산액 300억에 도달하는 관상어 수출 입국으로 알려져있다.

각종 어항 크기 생산 판매만 100억 위안 가량이고, 관상어 시장의 잠재력과 시장환경은 양호하지만, 산업 규모가 작은 편이고 과학기술 수준이 낮아 양식 수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 인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KOTRA 광저 우 무역관 자료 분석으로 장묘 관련 상품이나 매뉴얼도 이에 맞게 다양하게 구 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중국의 장례문화 차이는 존재하며 중국인들은 전통적인 묘지 안치를 추구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에서 사람 또한 봉안당 안치를 권유하고 있는바.

한국의 반려동물 장례절차를 중국에 반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8)</sup>

<sup>28)</sup> 자료: 강성욱, 2016-05-13 '불황 모르는 중국 애완동물시장, 서비스산업으로 확대'시나경제망, 바이두, 유로모니터, 첸진망, 민텔, 중국인민재산보험 홈페이지, 소후신문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제5절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체계

# 1. 반려동물 장묘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연평균 사망이 68.8만 마리이고 화장 4.2만 마리, 기타 매장 등 64.6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최시영, 2019).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의 증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반려동물의 장례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지지 않고 있다. (황규성 외, 2015).

이하에서는 반려동물 포함 동물의 장묘와 장묘업 및 장묘행정에 관한 선행연 구들을 고찰한다.

첫째, 동물장묘(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황규성, 이충구, 김두성, 김성민, 김정래(2015)는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현재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키우는 사람의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30대, 10~20대 순서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또한 종교 유무와 종류에 따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무교 순서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긍정적인식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40대 이상, 종교를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짐을 알 수 있었고, 모든 경우에서도 부정적 인식은 매우 적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인식조사 결과에 의해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 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 할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를 현재하가받은 동물장묘 업체의 수로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화된 반려동물 전문 인력양성 등 수급계획을 세울 것을 제시하였다.

김정연 외(2018)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 장묘시설 입지에 대

한 인식을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778명이다. 이 연구는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에 비해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장묘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와 관련된 법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다.

장은혜(2015)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여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한 규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동물장묘업의 법 적 쟁점과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및 입법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결과 동물장묘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법적 개념의 정비, 매장의 예외 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법상 적정한 용도 분류, 동 물장묘 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 및 공설 동물장묘 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김영순(2017)은 동물장묘 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안으로 첫째,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동물이 동물장묘업이 대상이 되도록 하며, 둘째,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및 등록 거부 사유를 법률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셋째,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를 건축법령에 명시하고, 용도변경 기준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넷째, 반려동물 장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정 차원에서 행정절차와 공공서 비스 등에 대한 관리와 행정규제에 집중한 연구가 있다.

위 김영순이 제시한 개선방안 중 세 번째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는 2017.2.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에 동물장례식장을 별표1의 제28호에 명시하고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을 명시하여 현재 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토론회에서 한국반려동물협회의 최시영은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최시영(2019)은 반려동물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반려동물 화장의 문제점으로 고객 접근성 저하, 화장시설 부족, 사체 관리/처리 부실 및 제도적 지원 미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안으로 반려동물은 물론, 유기/실험

동물 등의 인도적 사처 처리를 통한 '사후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 장례의 올바른 문화 수립 및 인재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폐기물과 유기 등 환경/위생적 사회적 문제 해결과 올바른 공중보건 보전을 들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장묘를 경제적 차원에서 단위 산업 분야로 보고 현황 분석과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규범 제정을 위한 기초적 논의를 주제로 2017년 10월 13일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이란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사육,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세부 영업의 목록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다(동물보호법 제36조). 즉, 이 워크샵에서 반려동물 장묘업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한 부분으로 고찰되고 있다. 이 워크샵의 주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의필요성과 법철학적 기초(송재일),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본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법의입법 방향(윤익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동향(김원태), 일본의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관련 법제(강영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개별 영업에 관한 행정규제수단 검토(윤기중),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인증제 도입 검토(최종권) 등이다.

이외에 반려동물 장묘, 장묘업, 장묘행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로 이 연구에 참고가 될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도경(2020)은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상실한 반려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나아가 사회 복지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반려견 상실 경험을 한 참여자들의 상실 경험을 살펴보고 상실 경험으로부터 회복과정을 위한 애도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상실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결과 반려견 상실 경험의 상위 범주 7개는 '반려견 상실의 빈자리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청천벽력 같은 반려견의 준비되지 않은 죽음', '고별의식으로 작별 시도',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통', '반려견 상실 후 후폭풍', '공허함을 채우려는 갖가지 시도', '상실의 현실 수용'으로 정리했다. 이 연구는 상담과 치료적 방안을 위한 사회 복지적 개입을 모색하고 있다.

전소영(2019)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건조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라고 적시한 바 있다29).

박만평(2020)은 '반려동물의 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동물의 지위는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의 지위에 있으며 「형법」상 동물은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인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을 권리의 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간 중심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정기(2010)는 독일은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Tiere sindkeine Sachen) 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동물이 "생명체를 가진 동료"로 존중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론상 동물을 단순한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이 대두되었음을 강조하며 향후 국내의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동물의 또 다른지위 즉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 국민적 법 감정상 제3의 지위가 필요하며이는 향후 민법과 형법에 있어서도 준용되어야 할 가치임을 주장하였는데 동물장묘 업체를 찾는 반려인 중에는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을 잃고 장례와 화장을위해 오는 반려인들이 있다.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닌 물건이 손괴당하여 대물처리 보상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에 또 한번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이제 반려동물의 권익과 그 보호자인 반려인들의 법감정을 위해서도 반려동

<sup>29) 2016. 1. 21.</sup>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제3조에서 '동물보호법 제32 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예외가 된다'라고 개정되어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 첨부 서류에서도 2016. 1. 21.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단서 조 항이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확인치 못한 오류가 발 견되었다.

물에 대한 제3의 지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김성일(2019)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반려동물 화장시설과 봉안당에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을 접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또한 '펫로스 증후군'의 특성과 반려동물 추모공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간구성의 특성을 도출하여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문화 확산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을 제시하였다.

추모의 행위와 추모의 대상에 대한 기억은 추모공간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루어지므로 진입공간에서 추모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상실한 반려인이 현재 반려동물과 행복한 모습의 반려인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치유가 되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고통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을 상실한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이 두 그룹 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반려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반려동물의 장묘, 장묘업 및 장묘 행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 연구 자료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찾을 수 있는 관련 선행연구들도 사회문화적 차원, 법 정책적 차원, 행정규제(관리) 차원 및 경제적 차원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 연구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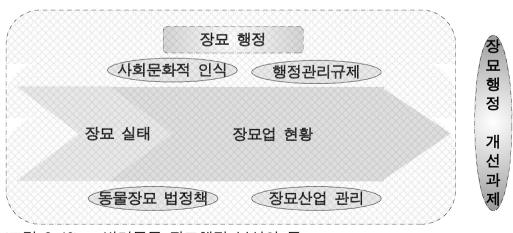
### 2. 이 연구의 분석체계

이 연구는 반려동물의 장묘와 장묘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장묘행정을 집중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지만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이고 선구적이며 반려동물 장묘행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즉, 반려동물 장묘와 장묘업을 대상으로 정부 역할과 기능 즉, 행정문제를 문헌고찰과 관련 통계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실증적으로 엄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정교한 연구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분석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상하여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모하려 한다.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엄청난 수의 반려동물 양육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아직까지 국내 반려동물의 장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과 관련 있는 적은 수의 선행연구들은 첫째 사회문화적 차원의 국민 인식조사 연구, 둘째 법적 차원에서 동물장묘에 관련한 법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셋째 구체적인 행정적 차원에서 장묘(업)의 행정관리와행정규제에 집중한 연구 넷째 경제적 차원에서의 반려동물 장묘 산업 관리를연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중 어느 하나의 차원에 집중하여 연구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한 것을 기초로위 4가지 차원 모두를 대상으로 장묘업 현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장묘행정을 분석하여 장묘행정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장묘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 즉, 장묘행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 인식실태, 법적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법 정책,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 관련 구체적인 행정관리와 규제,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장묘산업관리 등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장묘행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10> 반려동물 장묘행정 분석의 틀

# 제3장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 분석

# 제1절 반려동물 장묘업 일반현황

# 1. 반려동물 사후처리 실태와 장묘업

최시영(2019)에 따르면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연평균 사망 66만 마리이며 화장 3만 마리 기타 매장 등 63만 마리로 추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연평균 사망이 68.8만 마리이고 화장 4.2만 마리, 기타 매장 등 64.6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표 3-1> 반려동물 사망통계(추정치)

반려동물	개체 수	평균 수명	年 평균 사망 추정치	사망 시	기타
			1 0 / 1	화장	매장 외
개	632만	13년	48만	3만	
고앙이	243만	13년	18만		63만
합계	875만		66만	(화장장이용)	
농식품부	부 추정치(	(2017년)	68.8만	4.2만(6.1%)	64.6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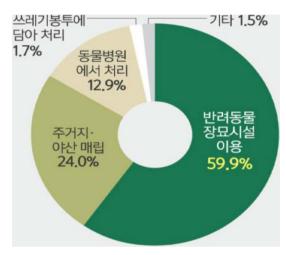
※ 자료: 최시영, (2019),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토론회 자료집(2019, 5, 1, 국회의원회관).



<그림 3-1> 연간 반려동물 사체 발생량과 처리용량(농림축산식품부)

※ 자료: 최시영, (2019),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토론회 자료집(2019. 5. 1. 국회의원회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계획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59.9%, 주거지·야산 매립 24.0%, 동물병원에서 처리 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 1.7%로 조사되었다.



<그림 3-2> 반려동물 사망시 처리계획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사후처리실태를 구분해보면 먼저 합법적 처리는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99호]과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에 의해 규제받는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에 의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동물의 사체(死體)는 폐기물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하고 있는 바, 비인도주의적 사체처리방법이다.

둘째, 동법 제2조 5호에 의해 동물병원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폐기물로써 일괄 소각하지만 이 역시 비인도주의적 사체처리이다.

셋째, 동물보호법 제32조 1항30)과 동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sup>30)</sup>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sup>1.</sup>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sup>2. ~ 8. (</sup>생략)

제36조 1호<sup>31)</sup>에 의해 동물장묘 업체에서 화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동물장묘 시설에 대한 주민반감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 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sup>32)</sup>

다음으로 반려동물 사후처리실태 중 불법적 처리로 매립하거나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환경오염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 3-2> 반려동물 사망시 처리 실태

법규 준수 여부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처리기준	현실태	문제점
	폐기물	2조1호, 폐기물'의 기준 명시	쓰레기 종랑제 봉투	폐기물	비인도주의적 시체처리
	관리법	2조5호, '의료 폐기물'의 기준 명 시	일괄소각	폐기물	비인도주의적 사체처리
합법	동물보 호법	32조1항, '동물장묘업'	화장	화장	장묘시설에 대한주민반감
불법	_	-	_	매립 및 무단투기	환경오염 및 혐오감 유발

※ 자료: 최시영, (2019), 반려동물 장묘현황과 개선방안 고찰,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토론회 자료집(2019, 5, 1, 국회의원회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sup>31)</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sup>1.</sup>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전용의 봉안시설

<sup>2.~ 8. (</sup>생략)

<sup>32)</sup>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up>1. ~ 8. (</sup>생략)

<sup>9. 「</sup>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 묘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 (생략)

대한민국 공무원 공상유공자회가 주관하고 황주홍 국회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주최한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019. 05. 01.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불법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취지에서 열렸다. 여기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반려동물 등록 장묘업체 중 화장장은 28곳에 불과하며 화장시설 부족으로 장묘 및 이동비용 증가,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현상에 따라갈수록 화장장례 비용이 높아지고그에 따라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이 횡행하다고 지적되었다.

장묘 업계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부족하고 사체 관리 및 처리가 부실하며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요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반려동물이 죽은 장소에 따라 폐기물 처리방식이 달라져 폐사한 동물들의 불법매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도 갈수록 높아져 현행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민국 공무원 공상유공자회 문진수 회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2조 5천억 원대를 상회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이 이제는 가족이 된 세대가 많아진 만큼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미디어 워치, 2019.05.01.)

하지만 2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전국 반려동물 등록업체는 23개가 증가하여 56개가 되어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부족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특정 지역에서는 등록업체가 밀집되어 과당경쟁의 폐해(弊害)를 보이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유지되다가 그 동물이 사망하게 되면 그 관계도 소멸된다. 이러한 소멸과정 속에서 그 동물을 취급하는 자에게는 그 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수반된다.

소유권자와 동물의 관계가 반려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자에게는 그 동물과 마지막 이별을 할 시간 과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폐기물(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공·사설 동물장묘 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박만평, 2021).

이렇게 사망한 반려동물의 장례절차는 소유권자와 반려동물이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순간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써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자들 은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동물 취급자들 간에 'COVID-19' 등 유해한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면(對面)에 의한 장례 행위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코로나 사태 중·후에 동물장례절차는 ① 동물장묘 업자가 그 과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화상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자에게 그 절차를 보여주는 비대면(非對面) 방법에 의하거나, ② 인공지능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때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보다 강화된 대면(對面) 관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혁명 시대에 맞추어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박만평, 2021).

# 2. 동물장묘업체 일반현황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경 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7개의 동물장묘 업체가 있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두 배로 늘어 14개 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15년에는 16개의 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의 농림축산 식품부의보도 자료에는 국내 반려동물의 양육 통계수치는 100만이었다.

이 당시에는 반려동물인 개의 등록업무가 막 시작될 무렵으로 등록하지 않은 전국 반려동물의 양육 숫자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래서 어떠 한 자료에도 국내 반려동물의 양육현황에 대한 발표자료를 신뢰하기가 어려웠 다. 다만 1천만 반려동물 시대라는 말만 막연히 돌던 시기였다. 그러나 동물장 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에 대한 사항을 신고 등록하여야만 하였기에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었으며 전국 10여 개의 동물장묘 시설에서 전국 의 동물 사체를 화장처리 하기에는 시설이 태부족인 상황인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8년도를 넘어서면서 전국의 동물장묘 업체는 허가업체가 33개에 이르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등록업체 수가 56개에 달하고 있으며 업체의 영업 실태를 확인해 보면 하루 1~2마리를 화장에 그치는 업체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

장묘 업은 57개소<sup>33)</sup>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전체의 0.3%이고, 종사자는 245명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전체 종사자의 1.0%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8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장은 2018년 13,491개소, 2019년 17,155개소, 2020년 19,285개소로 증가 되었으며, 종사자는 약 2만 4,691명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동물 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순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는 2018년 16,609명, 2019년 22,555명, 2020년 24,691명으로 증가 되었으며, 동물 미용업이 8,74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표 3-3>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업종	개소수	비율	종사자(명)	비율
허가	동물생산업	1,952	10.1	2,710	11
	동물판매업	4,159	21.5	5,397	21.9
	동물수입업	120	0.6	172	0.7
	동물장묘업	57	0.3	245	1.0
등록	동물미용업*	7,271	37.7	8,741	35.4
	동물운송업*	656	3.4	739	3.0
	동물전시업*	664	3.4	892	3.6
	동물위탁관리업*	4,406	23	5,795	23.4
	합계	19,285	100	24,691	100

\* 동물보호법 개정(2017.3월)으로 2018년부터 4개의 업종 현황 추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 태조사 결과

사람이 사망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장이나 화장으로 시신을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최근 국내 화장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봄과 가을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장 예약을 못 해 4일장이나 5일 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장묘 상황은 그러하지 않다. 아직 화장률이 10%를 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장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sup>33)</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동물 장묘 업체는 57개로 발표되었으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는 현재 56개 업체만 등록됨.

반려동물과 동물장묘 업체의 숫자를 단순 비교하고 개나 고양이의 평균 수명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동물장묘 업체의 숫자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지만 현실은 그와는 사뭇 다르다. 사람의 사후 화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장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였으며 현재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와 장례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추석 무렵이면 홍보를 지속하여왔으나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캠페인 등의 홍보는 지양하고 홍보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도 지금은 각 방송사에서 '동물농장', '개는 훌륭하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친근함과 반려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알게되었다. 2018년도 무렵까지는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었다가 며칠 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파묘하여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2020년부터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어지고 비용이 부담스러워도 단순 화장만이라도 해주려는 풍토로 바뀐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논산 리멤버파크 상담자료) 이제는 동물 사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나 불법매립을 없애고 화장에 따른 자연장 처리를 적극 홍보하여 반려동물의 사체에 대한 화장률을 더욱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재된 전국 동물장묘 업체 현황을 분석한다. 2021년 5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있는 전국의 동물장묘 업체는 56개이다. 그러나 동물장묘 업체의 영업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사항에서 벗어나는 것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동물장묘에서 필수적인 '화장'(건조장 포함)이라는 영업 항목이 빠진 업체를 발견할 수 있다.

동물장묘 업의 신고, 등록이 어려운 것은 바로 '화장'이라는 영업 항목 때문이며 반려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의 사체를 데리고 오는 것도 바로 이 '화장'을 하기 위하여 오는 것인데 '화장'이라는 영업군이 빠진 동물장묘 업체는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화장'에 대한 신고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봐야한다. 그 이유는 바로 현행법상의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불법 장묘업자들의 노림수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 동물장묘 업은 장례식장, 화장, 봉안, 이렇게 3개의 영업 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장례식장은 단순히 동물 사체를 가지고 잠깐 동안 추모식만 진행할 뿐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는 영업이다. '화장'을 위한 바

로 전(前) 단계로 사업의 목적인 수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업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 광주, 인천 등 광역시 단위에서 신고·등록을 한 동물 장묘 업체들의 수익과는 무관한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신고·등록상황을 분석하 면 표3-4와 같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는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아 동물장묘의 건축군인 별표 1-26호 '묘지 관련 시설'의 부지를 찾기에 매우 어렵다. 변두리에 녹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지역이기에 원칙적으로 사설동물장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축법상 별표 1-28호 장례식장은 사람장례식장과 같은 건축군이기에 도심지 한복판에서도 신고·등록이 가능한 영업이다. 불법동물장묘 업자들은 이 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동물장묘업 3가지 영업 중에 어떠한 영업 항목에 대하여 신고·등록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동물전용 장례식장으로 신고·등록을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 업과 똑같은 등록증을 발부해주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34)에 의거 별지 15호 서식으로 동물장묘 업을 신청하고 첨부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시군구청장은 위 같은 법 4항35)에 의거 아래 그림처럼 별지 16호의 서식인 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별지 16호 서식은 첨부된 것처럼 동물장묘 업 3가지 영업군을 '영업'이라는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물장묘 업체에 걸어두 어도 어떠한 영업으로 신고·등록하였는지 일반인들이 구별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렇듯 사실상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합법적인 동물장묘 업체가 아닌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화장업체'라는 것이 사실상 맞는 말이다.

<sup>34)</sup>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 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up>35)</sup>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동물보	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	19. 8. 26.>					(뒤쪽)			
영업 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비라며, 비당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짝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2. 영업장의 시설 니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 5. 동물사체에 대한 건조장시설을 4 6. 폐업 시 동물의	내역 및 배치도	명하는 서류가 있는 와 처리계획서(동물: 대당합니다)	- 경우에는 그 화장시설 또는	서류 수수료 동물 1만원			
접수번호		접수일시	받급열	처리기간	15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 2. 건축물대장 및 토저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	루번호(법인등	록번호)						
신청인	주소							행정정보 공동이			
	. (전화번호: )				보인은 이 것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당공부원이 주인등목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을 통하여 담	
	명칭(상호)							신청인		(A)	명 또는 인)
	소재지			(전화번호: )							0/
NOT		[ ] 동물장묘업		(0-10-2-	,			유의사형	ţ-		
영업장	신청업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치 []동	물수입업	[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미용업 [ ] 동물운송업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 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경 부에 대하여 설치 여부				
1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						처리절치	ŀ			
록	을 신청합니다					신청서	71.4	첨부서류	현장조사	and all	587 W3
	년 월 일				작성	-•	확인 및 검,	및 시설조사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사장·군수· 관점	사장・군수・ 구현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덕 구형점	사장・군수・ 구성장
(시장・급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89	red	196	186	76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3. 22.>

등록번호 제 [ ] 동물장묘 [ ] 동물판매 [ ] 동물수입	럽 [ 업 [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비업 <sub>등</sub>	등록증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영업의 종류 등록조건		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 벆부를 함께 표시	물화장시설, 동물건	건조장시설, 봉
「동물보호법」제33 시행규칙 제37조제4 으로 등록하였음;	항에 따라	을 법 [ ] 동물장묘업 [ ] 동물판매업 [ ] 동물수입업	[ ] 동물전시 [ ] 동물위탁 [ ] 동물이용 [ ] 동물운송( <sup>월</sup>	프 <u>업</u>
٨ŀ	장 • 군수	- • 구청장	직인	

210m×297m[백상지(150g/m²)]

# <표 3-4> 국내 반려동물 장묘업체 현황

번호	업체명	소재지	영업내용
1	하늘소풍	경남 고성군	장례. 화장
2	한별리멤버파크	경남 함안군	장례. 화장. 봉안
3	위드업	경남 양산시	상 동
4	(페)노블레스	경남 양산시	상 동
5	펫누리	경남 김해시	상 동
6	아이헤븐	경남 김해시	상 동
7	시민반려동물장례식장	경남 김해시	상 동
8	펫로스케어	경남 김해시	상 동

9	스윗드림펫	경남 칠곡군	상 동
10	강아지 펫 헤븐	경북 성주군	상 동
11	하얀민들레	경북 청도군	상 동
12	아이들랜드	경북 경산시	상 동
13	㈜더소울펫	경북 구미시	장례.화장.건조.봉안
14	전주하늘	전북 완주군	장례. 화장. 봉안
15	펫바라기	전북 남원시	상 동
16	위드엔젤	충남 예산군	상 동
17	리멤버파크	충남 논산시	상 동
18	좋은친구들	충남 공주시	장례. 화장
19	에이지펫	충남 천안시	장례. 건조. 봉안
20	우바스	충북 청주시	장례. 화장. 봉안
21	펫로스엔젤	충북 청주시	상 동
22	스마일 어게인	충북 영동군	상 동
23	마므레 스카이펫	충북 옥천군	화장. 봉안
24	굿바이펫	충북 제천시	장례. 화장. 봉안
25	펫메모리얼	강원 횡성군	상 동
26	강릉 펫사랑	강원 강릉시	상 동
27	스타펫	경기 포천시	화 장
28	더 고마워	경기 양주시	장례. 화장. 봉안
29	백꽃사랑하이빛	경기 광주시	상 동
30	21그램반려동물장례식장	경기 광주시	상 동
31	하늘애	경기 광주시	상 동
32	㈜해피엔딩	경기 광주시	상 동
33	㈜펫포레스트	경기 광주시	상 동
34	러브펫	경기 광주시	상 동
35	펫오케스트라	경기 화성시	상 동
36	㈜우리반려동물문화원	경기 화성시	상 동
37	강아지넷	경기 화성시	상 동
38	㈜마스꼬따 휴	경기 김포시	상 동
39	페트나라	경기 김포시	상 동
40	㈜위디안(엔젤스톤)	경기 김포시	상 동
41	아이드림펫	경기 김포시	상 동
42	㈜하이루	경기 김포시	상 동
43	㈜아리아펫	경기 이천시	장례. 화장
44	씨엘로펫	경기 용인시	장례. 화장. 봉안
45	리멤버	경기 용인시	상 동
46	몽몽이엠파크	경기 남양주시	상 동
47	㈜펫바라기	경기 고양시	상 동
48	이별공간	울산 울주군	상 동
49	㈜하늘펫	광주 광산구	장 례

50	어게인	인천 서구	봉안
51	㈜더 포에버	인천 서구	장례. 봉안
52	대구 러브펫	대구 달서구	장례
53	아이별	부산 기장군	장례. 화장. 봉안
54	센트럴파크	부산 기장군	상 동
55	파트라슈	부산 기장군	상 동
56	무지개언덕	세종시	상 동

# 제2절 반려동물 장묘업 설립유형(공설/사설) 실태 분석

## 1. 사설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 1) 지역별 반려동물 장묘업 분석

2020년 현재 전국의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모두 57개가 등록되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국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경기도 광주, 김포, 화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이 21개의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집중되어 모여 있는데백분율로 환산하면 37.8%이다.

<표 3-5> 동물장묘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5		-L	동물장묘업(업체 수)				종사	
지역	합 계	백분율	장례시설	장례 · 화장	장례·화장·	장례·화장·건조·	기	자
	/ЛI		만 운영	시설 운영	납골시설 운영	납골시설 운영	타	수
총계	57	100%	6	4	40	2	5	245
부산	2	4%	_	_	2	_	_	12
대구	1	2%	1	_	_	_	_	5
인천	2	4%	1	_	_	_	1	14
광주	1	2%	1	_	_	_	_	1
울산	1	2%	_	_	1	_	_	3
세종	1	2%	_	_	1	_	_	3
경기	21	37%	_	2	17	_	2	108
강원	2	4%	_	_	2	_	_	4
충북	5	9%	1	_	3	_	1	12
충남	5	9%	1	1	2	_	1	14
전북	3	5%	1	_	1	1	_	11
경북	5	9%	_	_	4	1	_	17
경남	8	14%	_	1	7	_	_	41

※ 현황(업체 수 기준, %) : 경기 37 〉 경남 14 〉 충북, 충남, 경북 9 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 태조사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영업권에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1개의 업체의 영업의 성적은 어떠할까? 과연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물장묘 업체의 수가 부족한 것일까? 여기의 해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정상적인 업체만 21개인 것이지 불법적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하루 발생하는 수도권 동물의 사체처리 용량을 훨씬 웃돌고 있다. 따라서 영업실적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판단된다. (김포 펫헤븐 대표 인터뷰)

인천의 동물장묘 업체 2개소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한 업체의 영업 항목에는 '화장'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영업군을 찾아 확인해 보니 인천에 위치한 '○○○'이라는 동물장묘 업체는 동물전용 봉안시설로 신고 등록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 업체의 영업 실태를 확인해 보니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마치 동물화장장 영업을 정식 신고·등록을 마친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를 모르는 반려인들이 자신이 양육하던 반려동물들의 사체를 가져와 화장을 위탁하고 업체 측은 불법 화장장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0년도에 경찰을 신고를 하여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합법을 가장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다음 같은 지역 인천에 있는 '〇〇〇'를 살펴본바, 앞의 업체처럼 동물전용 봉안시설 영업과 동물전용 장례식장의 영업 신고·등록만 한 채 같은 방식의 불 법 화장장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영업군에 속하는 김포의 5개 업체는 공동대응에 부심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상 그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업체들의 영업을 막아내기에는 힘겨워하고 있다. (김포 펫해븐 대표 인터뷰)

그다음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집중 되어 있는 곳이 부산 경남지역이다. 일단경남 김해, 양산을 포함하여 같은 영업군을 두고 있는 업체가 10개소로 백분율로 환산해서 19.8%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인터넷 클릭 단가가 1만 원을 상회 하고 있어 월간 인터넷 광고비가 1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과의 거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소개비 (리베이트) 문제이다. 반려인들이 주로 찾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들이 치료받다가 사망하면 수의사들이 동물들을 인근 동물장묘 업체로 연결해주면서 그 대가로 5~10만 원가량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동물장묘 업자들이 마지못해 소개비(리

베이트)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형적인 실정법 위반에 부정부패의 한 단면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경남지역과 부산지역이 그 정도가 심하다. (동물장묘 업체 양산 위드업 대표 인터뷰)

이러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고 소관부처의 안일한 행정으로 균형을 맞히지 못한 탓으로, 2018년 전후로 갑자기 김해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업체가 급격히 늘어난 폐해이다. 장묘업체 스스로가 서로 망해서 문을 닫는 업체가 생겨나길 바라며 출혈 경쟁을 일삼는 것이다.

그 외의 과당경쟁 지역으로 꼽자면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과 충북의 업체 10개소로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국의 17.5%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상호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의 폐해는 기본 반려동물의 화장비를 보통 5kg 이하의 반려동물은 20만 원이 평균 비용이지만 충남 ○○시의 ○○○이란 업체에서 인터넷 광고로 가격을 15만 원으로 하향하면서 기본적인 가격이 무너져 반려동물 장묘산업의 시장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업체에서 '패키지(package)'상품으로 화장 + 수의 + 관 + 유골함 등을 묶어서 20~30만 원대로판매를 하고 있으며 게다가 동물병원의 리베이트, 그리고 포털 싸이트의 검색어 광고의 클릭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보면 앞으로의 수익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광역시 단위의 변칙적인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36) 그리고 대구의 '○○○'이 동물전용 장례식장으로 영업 신고·등록을 하고 변칙적으로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

# 2. 공설 반려동물 장묘업 추진 분석

# 1) 지방자치단체의 공설(公設) 장묘시설 추진 실태

(1) 창원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

<sup>36)</sup> 광주광역시 '○○○'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다. 2016년 변칙적으로 동물전용 장례식장으로 신고·등록을 하여 불법화장의 영업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곳은 창원시가 처음이었다. 창원은 기존의 창원시와 마산시·진해시가 통합하여 면적은 743.77k㎡에 이르는 낙남정맥(洛南正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37)

창원시는 2016년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환경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창원시설공단에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 자료를 내면서 각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과 수요예측, 문제점을 분석해 필요성을 점검하여 반려동물 장묘시설 입지로 '진해화장장'을 검토하였다.

공단은 앞으로 이곳에 화장로 2기 설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부대시설을 갖출지를 생각하고 점검 판단해서 시설 노후화로 관내 폐쇄 중인 '진해화장장'을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공설화장장으로 만들겠다는 발표하고 TF팀을 구성하여국내의 기존 사설 동물장묘 시설과 일본의 동물장묘 시설을 견학하는 등 준비에 부산하였지만 결국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들어서지 못하였다.

해당 진해화장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기본 적인 법적 제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다가 결 국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추진사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 (2) 김해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

2018년 7월 김해시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김해시 상동면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총 57억 6천만 원으로 반려동물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을 계획하고 추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해지자 김해시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경남 최초의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 서비스 기능을 갖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하였다.

2019년 전체사업비 80억 원(국비 50%, 시비 40%, 도비 10%)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놀이 공간, 교육문화시설, 유기동물 보호센터, 동물 장묘시설 등이 포함

<sup>37)</sup> 창원시 홈페이지 도시정보

된 복합적인 테마파크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유 치희망 마을을 공모하였지만 김해 지역의 마을 중 유치희망을 원하는 마을을 찾을 수가 없어 2021년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 (3) 임실 오수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6월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 동물장묘 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개소당 50억(국비 15억 지원) 규모의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로 2개소(전북 임실군과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임실군이 공설(公設)로는 전국 제1호의 동물장묘 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

임실군은 전국 제1호 공공 동물장묘 시설 선정은 도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 시키고, 불법매립·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임실군에서는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유실·유기동물 사체처리 등 공익적 기능 역할 수행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 임실군이 오수면에 반려동물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려동물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이러한 스토리를 내세워 해마다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였고 2018 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공설 동물장묘 시 설은 앞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활용하여 단순히 동물을 화장하는 시설이 아니라 봉안당과 수목장이라는 추모공간 조성을 통해 반려견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또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고 또한 공설동물장묘 시설과 연계하여 인근 오수의견 관광지에 앞으로 반려동물 산책 정원, 야외캠핑장, 체험센터 등 원스톱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오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계획임을 밝혀왔었다.

국내 최초 공공 동물장묘 시설인 임실군 발주 오수 공설 동물장묘 시설에는 ㈜동방 환경 기연의 동물 화장로 총 3기로 소형(25kg/hr) 2기와 중형(50kg/hr) 1기를 설치하였으며 동물 화장로 및 후단 대기오염방지시설, 영석제조설비, 분골기 등이 설치되었으며 동물보호법에 맞는 설치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인허가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그림 3-3> 임실 오수의 개 '옛날 신라 시대에 자신이 키우 던 개를 너무나 사랑한 주인은, 외출할 때마다 개를 데리고 다녔 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은 술에 만취하였고, 집으로 가는 풀밭에 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근처에서 불이 났고, 불길은 잠든 주인에게 번져왔다. 개는 주인을 깨우기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옆 개천으로 달려간 개는 온몸에 물을 묻혀 불 위를 뒹굴었다. 덕분에 주인은 화마를 피했지만, 개는 지쳐 죽고 말았다.'한 번쯤 들어봤을,이 감동스럽고 슬픈 이야기는 통일 신라 시대'오수의 개'(오수견) 설화이다.

이야기는 개의 충심에 감탄한 주인이 개를 묻어주고 그 무덤에 지팡이를 꽂으니, 지팡 이가 나무로 자랐다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된다.

또한, 임실군은 2020년 국토교통부 상반기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00만 원을 포함 총 1억2,000만 원을 투입, 반려동물을 테마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을 추진하고 있다. 아카데미 교육은 펫 뷰티션(미용)과 반려동물 장례 코디네이 터, 반려동물 식품관리사 등으로 진행되며, 전체 교육생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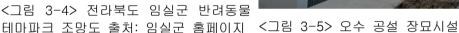
임실군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오수면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공설 장묘시설 건립, 오수 제2 농공단지 내 특화단지 등 반려동물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며 반려동물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전국적 메카로 키워 나갈 예정이며,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강화를 위한 세계명견 테마랜드 관광지 조성, 반려동물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반려동물 국민 여가 캠핑장 건립 등에 적극적인 대응하는 등 반려동물산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실군은 현재 공설 장묘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전북에는 남원과 완주에 사설 장묘시설이 있으며 현재 전주 등지에 계속적으로 사설 장묘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민간위탁 사업 부분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오수 공설 장묘시설의 운영 시기를 확정치 못하고 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실군의 오수 공설 장묘 시설의 성공이 향후 국가의 공설 장묘 추진사업의 향배(向背)가 달려있다.







# (4) 제주도 반려동물 공설 장묘 사업 추진 실태

제주도의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 이다. 그러나 2021년 5월 현재까지 제주도는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자신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사업 추진'을 내세웠으며 이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2년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중 11,400백만 원(국 비 2.067, 도비 9.333)을 투입하여 동물보호 관련 시설 확충 등 반려동물 문화정 착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사무실, 추모실, 상담실 및 화장장 등) 신축을 공약하고, 반려동물 문화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추진, 유기동물 구조. 포획팀 운영 확대. 읍. 면 지역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TRN) 운영 확대.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그리고 서귀포 동물 보호센터 설치 및 전담조직 인력 확충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제주지역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한 공설 장묘시설 설립 사업이 난

항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복지 문화 확산에 따라 공영 동물보호 센터·공설 동물장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로 9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2020년부터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센터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8월쯤부터 도내 1개 지역에서 장묘시설 설립 등을 위한 주민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부지의 지역주민들은 동물장묘 시설을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여 최종 무산되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는 공설 동물장묘 시설 운영(민간위탁)을 통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마을의 경제수익 창출은 물론 주민에 일자리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방침으로 공모에 나섰지만,

제주도의 사람 화장장 소재의 마을 1개소만 지원했을 뿐 공모에 지원한 다른 마을은 없었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한 1개의 마을도 다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곧바로 공모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다.

2019년 기준 제주도 내 반려동물은 13만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사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제주도 내엔 반려동물 사체처리를 위한 장묘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의 반려인들은 자신들의 키우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불법 매립하거나 화물로 포장하여 항공기나 배를 이용하여육지의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택배로 보내 화장을 하고 그 유골도 택배로 다시전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기동물 사체가 사료의 원료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한 동물 보호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제주 동물보호센터 내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장묘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라며 제주도의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 설립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지사의 선거 공약사업이었지만 부지 선정과 주민들과의 동의를 구하기가어려워 현재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 동력을 점점 상실하고있다.

## 제3절 동물장묘 시설 설치 관련 소송 및 갈등사례

#### 1. 용인 씨엘로펫

용인시에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씨엘로펫이 반려동물 관련 건축물 용도가 없던 시기에 동물장묘 시설을 건축하던 중, 동물장묘 시설이 묘지 관련 시설로 바뀌자 이를 다시 용도변경을 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였으나 처인구는 차일피일 미루며 용도변경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업체 측에서 처인구청 앞 1인 시위라는 직접적인 실력행사로 민사소송 결과대로 행정관청에서 즉각 민원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용인시 처인구 면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화장장 등 동물전용 묘지시설이 잇따라 추진되며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처인구 백암면 소재의 신축건축물의 용도를 소매점에서 동물화장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업체측이 용인시에 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이에 대응하여 남사면·모현면·백암면 지역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서 동물장묘 시설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결국은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동물장묘업을 준비한 지 5년만인 2020년에 용인시 백암면에 씨엘로펫이 들어와 현재 성업 중이다.

#### 2. 논산 리멤버파크

2016. 10. 반려동물 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에 자연녹지 전(田)을 매입하여 대지로 전환한 후, 대지 60평 위에 연면적 120평의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당시 건축법상 동물장묘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이 준공되었고 곧이어 건축법 개정으로 동물장묘 시설이 묘지 관련 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동물장묘업 신청은 논산시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 목적상의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신고 서가 반려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연산면 이장단 회의에서 우리 고장에 '개 화장장이 웬말이냐'라며 결사반대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수 회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연산면의 시의원과 이장단장, 해당 토지를 매매한 지주 등이 집회를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리멤버파크는 재차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자 이 역시 논산시에서 반려하였으며 결국 이 사안은 논산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이유 있다는 재결을 받아내었다. 이후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 관련시설로 바꾸어 동물장묘업을 신고 등록하였으며 건물 1층의 절반가량인 25평과 앞마당은 애견카페와 놀이터로 이용하고 1층의 나머지 35평은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장38)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봉안당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3. 옥천 마므레 스카이펫

2019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한 장묘업을 하려는 업체가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영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동물장묘업 신고 등록이 반려되었다.

옥천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sup>39)</sup>을 들어 화장로 설비의 일부가 외부에 설치되어있다는 이유로 신고 등록을 불수리 하였다.

이에 업체 측은 처분 사유 부존재와 신뢰 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법 행정1부는 업체 측에서 옥천군수를

<sup>38)</sup> 관망대는 장례식장 추모실에서 반려동물의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누고 반려동물의 관을 화장 장으로 이동하여 화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곳.

<sup>39)</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sup>1.</sup>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이하생략)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장묘업의 장례, 화장, 봉안 등 개개 시설이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이다.

이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 내용은) 영업장의 전체 형태가 주위 건물 등과 구별되는 개별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시설이 한 건물에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 행정1부는 동물장묘 업자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옥천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며, "추가 제출된증거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으며옥천군은 항고를 포기하여 옥천 이원면에 동물장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되었다.

#### 4. 전주 하늘

2017년 11월 동물장묘 업체 전주 하늘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 용도변경을 완주군청에 접수하면서 진안군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속하지만 진안의 관문에 위치해있어 진안군과 주민들의 반대 투쟁도 심하다. 진안군 부귀면 이장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 년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진안군 애향운동본부, 재전부귀면향 우회, 인근 마을 주민들과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일원 마을 주민, 용문사 신도 회원 등이 반대 집회의 주된 민원인들이다.

완주군에서는 환경오염 유발과 진안군의 관문인 점, 주변에 자연마을과 대지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점, 진안군 주요관광지를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 및 지역 정서상 위해요소로부터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완주군청은 또 환경오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침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진안군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으로 조성한 대지조성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동물화장시설 건축 용도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환경, 주민생존권 및 재산권과 같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크기에 건축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전북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전주 하늘 측에서 제기한 행정 심판은 기각되었으며 전주 하늘 측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승소하여 건축용도 변경이 받아들여져 2020년에 완주군청에 동물장묘업 신고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 5. 양평 로이힐즈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지역에서 문을 열기까지 법률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를 극복하여야 하지만, 이런 문제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리 없이 신고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주민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물장묘 업체인 로이힐즈는 2017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삼산리 일원 임야 등 3천967㎡에 지상 2층 건평 451㎡, 전체면적 850㎡ 규모로 동물장묘공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양평군이 차량교행 문제와 진출입로 폭 20㎝ 부족, 주변 지역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려 공사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업체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이장단이 20명에게 2015년도에 5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주고 동물장묘업 추진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이장단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이장단은 해당 장묘업체의 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로이힐즈는 불허가 처분에 앞서 양동면이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의견 수렴 서를 돌려 '주민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서 등을 양평군에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주민 반대 의견서가 불허가 처분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이히즈는 동물장묘 사업 시작 전인 2015년 9월에 양동면 이장 협의회 이장 단 임원진 4명이 동물장묘공원 조성 사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여,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협의회와 동물장묘 사업에 동의하는 합의서 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월 지역발전후원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후원금 5억 원은 20개 리별로 2500만 원씩 나눠 가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장들이해외여행 경비로 500만 원을 요구했고, 또 각 리별 대동계에서 '합의 내용이 잘설명되어야 한다'며 후원금 1,000만 원을 요구해 총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로이힐즈측이 양동면 이장 협의회와 맺은 합의서에는 사업자는 동물장묘업 등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주민대표는 '협조 의무' 사항으로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동의한다고 되어있었다. 또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명시돼 있었다. 장묘공원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대표 3명 명의의 임약 2,876㎡(공시지가 917만 원)를 로이힐즈 측에 넘겨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힐즈는 건축허가가 불허 처분되자 이장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는데 이장들이 인허가 서류 접수와 동시에 '주민 의견 수렴서'를 작성·배포·취합하는데 적극적·주도적·조직적으로 개입해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여론 조장에 앞장섰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5억 원에 대한 후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세계일보, 2017, 12, 02)

이에 대해 양동면 이장 협의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업체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은 양동면장의 지시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이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20개 리 중 4개 리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3억 7,000만원가량)은 이미 설치된 양평공원(일반 장묘시설)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조성된(마을발전) 기금으로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1억 3,000만원가량은 (로이힐즈 측에 소유권이 이전된)임야 2,876㎡의 경우 지역발전에후원하기로 한 금액인데,설령 이장 협의회의 합의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맞섰다.이장 협의회는 이와 함께 "최근 게시된현수막은 게시 주체나 게시 장소 등을 놓고 볼 때 어떤 근거에서 양동면 이장협의회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장 협의회 측은 주민 3명이 협의회와 상의 없이 현수막을 건 것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조치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로이힐즈측은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7월과 11월 열린 1·2심 행정소송에서 로이힐즈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는데,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한 양평군은 서울고등법 원에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신청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평군이 사실오인에 기해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라며 양평의 로이 힐즈 동물장묘 업체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동물장묘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중부일보, 2018. 11.

동물장묘 업체 로이힐즈는 2019년 7월 12일 양평군 양동면에 동물장묘 시설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열고 설치공사에 착수했으며, 양동면에 착공한 동물장 묘 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이 약 4,000㎡에 연면적은 853㎡로 건축물과 야외 조 경시설을 포함하는 동물테마파크로, 동물전용 장례·화장 및 1,000기의 봉안시설 과 수목장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21년 5월 현재 아직까지 정식 사 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동물장묘 시설 설치 관련 소송 및 갈등사례들에서 보듯이 동물장묘 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부터 공사 허가, 준공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통과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통과하고 소송을 통과해야 동물장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 시작에 소송과 갈등은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 다.

물론 어떠한 필수불가결한 일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의 틀 안에서 위법성과 주변에 전혀 무해 하다고 검증된 사업은 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협조하여야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질 것이다.

### 제4절 반려동물 장묘업 불법 실태 분석

#### 1. 등록업체의 불법 화장장 운영 실태

2021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설 동물장묘업 업체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업체 모두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앞의 표인 '국내 반려동물 장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는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영업을 신고·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합법을 가장한 불법 업체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동물화장업을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상이나 건축법상 동물화장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화장'의 영업 항목을 빼고 단순히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영업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하고 동물장묘업의 실질적인 업무인 동물화장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이러한 형태로 불법 화장장을 운영하는 곳은 모두 56개 업체 중 4곳으로 파악되는데 장례식장업이나 봉안당업을 등록하고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업체의 불법적인 화장장 운영실태는 인근 등록업체들의 수 없는 신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동물보호법상 불법화장장 운영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정도로 미약하고 또한 단속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업무 행정공무원 1~2명으로는 비록 단속권한인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화장장 운영현장을 단속하기란매우 어렵다. 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불법 화장장 단속 업무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과의 협업으로 자칫 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있는 동물장묘 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2.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장장 운영실태

현재 반려동물 장묘업체 중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대부분의 녹지 공간이 개발제한 구

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동물장묘업 중 동물화장장시설이 원칙적으로 들어서기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적으로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가 인천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이라 인천의 반려인과시흥 경기지역의 반려인 그리고 수도권의 많은 반려인들이 찾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차례 단속을 하였지만, 단속의 불이익보다 수익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업체 측은 단속이 되면 벌금과 과태료를 내고 또다시 장묘업체 상호와 대표자 이름만 바꾸고 불법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은 2000년경에 국내 세 번째로 문을 열었던 장묘시설이었지만 진출입로 등 법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20년간 미등록영업을 하여오다가 2019년도에 이르러서 신축지로 이전하면서 비로소 화성시에 신고·등록을 마칠 수 있었기에 합법적인 동물장묘 시설이 되었다.

### 3. 이동식 화장로 불법운영 실태

국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이동식 화장로 운영은 동물장례를 가르치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공부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sup>40)</sup>

원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화장로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시작되어 졌으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일본의 '펫세레머니'라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상황실인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려동물 화장에 대한 문의 및 접수를 받으면 해당 주소지로 이동식 화장로 차량을 보내 반려동물 보호자의 집이나 현장

<sup>40)</sup> 보건복지부 관할 일반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지만 민간자격증 시대였던 때가 있었다. 일반 장례지도사는 2012년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민간기관에서 교육하고 그 기관 자체에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었다. 을지 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등 전국의 6개 대학에 장례지도과가 설치 운영되면서 국가자격증 시대의 시동을 걸게 되었으며 이윽고 2012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탄생하였다.

국내의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현재 민간자격증이다. 현재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민간자 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국반려동물 아카데미, 비전큐, 한국직업능력진흥원, 대전보 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정확한 교육기관들이 어느 곳인지 한눈에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여 러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발급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제도의 폐해가 심각 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에서 간단한 추모식을 진행하고 평소 반려동물과 추억이 어려있는 장소나 인근절, 공원 등 한적한 곳에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자동차 내에 장착된 화장로에넣어 화장을 진행한다. 약 1시간가량 후 화장이 끝나면 그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함 등에 담아서 보호자에게 전달하면 반려동물 화장의 과정은 모두 끝이 난다.

일본의 수골 과정과 한국의 수골 과정 중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유골을 수습할 때 젓가락을 이용하여 유골의 조각을 주워 담는 형태이고 한국은 원칙 적으로 유골을 수골 하여 분쇄하는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 분골해서 이를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일본은 화장로 설치 운영에 있어 까다로운 법규가 없기에 가능하지만, 구내의 실정은 화장로 설치 운영의 기준이 24시간 화장로를 감시하는 폐쇄회로가 2대 이상 설치되어있어야 하고,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화장로는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일정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건물의 용도는 묘지 관련 시설이어야 하며, 묘지 관련 시설의 건물은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에서나 인·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까다로운 법 규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화장로 영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2019년 5월 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공상유공자회가 주관하고 황주홍 국회 농림 수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한 '반려동물 장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불법적이고 암묵적으로이뤄졌던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열렸으나 사실상 이동식 화장로 차량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하는 자리였다.

이 토론회에서 일본의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차량 관련 조례와 운영사례를 통한 소비자 실태분석자료가 발표되었다. 여기서 국내의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시설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 그리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식 동물 화장·장례 서비스에 대해 산업부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

회'에서 실증 장소 미확보 등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실증 규제특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람직한 장묘 문화정착을 위해 동물 장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동식 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등록제 운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19.12.24.).

이러한 실정에서 서울·제주처럼 업체가 전혀 없거나 숫자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장례 서비스' '이동 장례식장'이라고 광고하는 불법 업체도 생겨났다.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 화장장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다. 이들은 "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거나 "합법 업체와 똑같은 시설"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중앙선데이, 2020.12.12.)

국내에서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로 운용에 있어서는 행정 당국의 사실 상 관리가 어렵고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 황으로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동식 화장로 차량의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첫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10일 전주에 '○○○'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면서 이동식 화장로 차량을 이용하여 전라북도 전주, 군산, 완주, 익산 등지에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9년 12월 10일 전북 군산에서 불법 화장을 하던 중 현장에서 반려동물 장묘 협회와 경찰에게 합동 단속되었고 군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이 기소하여 전주지원 군산지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 후 '○○'은 불법 영업을 포기하였다.

다음 또 다른 이동식 화장로 차량의 단속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의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은 대전 중구에 이동식 불법 장묘 업소 사무실을 차리고 1톤 포터 트럭을 개조하여 화물차량 부분에 불법 화장로를 설치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반려동물 화장 의뢰를 접수 받아 불법 화장장영업을 영위하였다. 2019년 12월 19일 반려동물 장묘 협회와 경찰의 합동 단속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체포 단속 장면은 MBC 9시 뉴스로 전국으로 보도되었다.

이 현장에서 단속되었던 경찰관은 모든 범행 사실을 자신의 부인에게 전가 하고 자신은 이동식 화장 차량의 운전만 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부인만 대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의해 기소되어 대전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 으며 경찰관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동식 불법 화장장 영업은 포기하였다.

이동식 화장로 차량의 현재 실태는 위 사례처럼 대전·충청권 그리고 전북권에서 기 활동 중이던 이동식 화장로 업체가 단속이 되면서 대전·충청권과 전북권에서는 더 이상 차량을 이용한 불법 이동식 화장장은 자취를 감추고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버젓이 불법 동물장묘 영업을 합법 업체인 양 광고하며 또 이를 보고 불법인 줄 모르는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 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업체들이 있다.

특히 이동식 화장로 차량의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은 경남권과 경기 북부지역, 서울 인근 지역, 그리고 동물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제주도에서 그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 제5절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 분석결과 종합

반려동물의 장례실태를 살펴보면 화장업을 등록하지 못하고 장례식장과, 봉 안당업만 등록한 업체는 최초 합법 장묘업체를 가장하여 불법 화장업을 영위키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탈법적 영업형태는 기존 등록 장묘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 쉬이 적발치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들과 연계된 일명 중계업체라고 불리는 떳다방 식의 애견 상조업체들이 그 중심에 있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무수한 지점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하고 이를 보고 동물 화장을 의뢰하는 반려인들이 있으면 그들의 사망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수하여 불법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분골하여 최초 의뢰하였던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물화장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각지역과 경기 모든 지역에 자신들의 지점망과 직접 운영하는 화장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로 반려인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수익은 불법 장묘업체와 화장비용을 5대5로 나누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중계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망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김포 지역과 경기도 광주 지역의 등록업체를 찾아다니며 협업을 요청하고 있으나 등록업체에서는 이들과의 일체의 거래를 지양(止揚)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장은 인터넷 포텔 검색어 노출 광고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등록업체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있다.(김포 펫헤븐대표 인터뷰)

급증하는 반려동물의 객체 수에 맞추어 장묘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남 김해, 부산지역에 몰려있는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영업 경쟁구도가 심화(深化) 되어지자 동물병원과의 거래에서도 동물장묘 업체에서 장례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반려인들이 해마다 인구의 10% 이상씩 늘어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함께 반려인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전북 임실군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받았어도 부지조차 확보치 못하는 실정들이다.

그나마 임실군 오수면의 공설 장묘시설은 역사적인 스토리 '오수 의견(義犬)' 이라는 설화의 고장이기에 주민들의 설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임실군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에 함께 선정되었던 경남 김해는 수년이 지났음에도 부지조차 확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임실군의 오수 공설 장묘시설도 완공되었음에도 운영의 주체를 선정치 못하고 있어서 아직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임실군의 사례는 추후 지방자치단체 의 반려동물 공설 장묘시설 운영의 본이 될 것이기에 그 성패에 관련기관의 관 심이 집중되고있다.

동물장묘 산업도 개와 고양이의 장례 위주로 상품이 개발되어 있을 뿐 소동물이나 어류 등의 장례에 맞는 상품군의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제 다변화(多邊化)되어가는 반려동물의 종류에 맞게 반려동물 장묘산업도 이에 보조를 같이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반려동물 장묘행정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반려동물 장묘업체에 대한 행정 규제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반려동물 장묘업체의 동물 사체 화장이 폐기물 관리법 저촉에서 벗어나면서 최근 3~4년 동안에 반려동물 장묘업체들이 전국 적으로 급증세를 이루었으며, 경남 김해시의 경우 2018년도에 한꺼번에 4개의 업체가 들어서면서 현재 극심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수 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 광주, 대구 등 광역시 단위에서의 반려동물 봉안당이나 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의 불법적인 화장장 운영 실태가 반려동물 장묘산 업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있지만 행정적인 단속이나 지도는 요원(遙遠)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장묘업체의 행태는 동물보호법상 불법 장묘업체 운영의 처벌수

위가 약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불법 장묘업체들은 정상적으로는 들어서기 어려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외 지역에 위치한 합법적인 장묘업체들 보다 지리적 여건이 우세하며 불법 장묘업체인줄 모르는 반려인들이 많이 이용 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업체들은 자신들이 등록한 봉안당 신고등록증이나 장례식장 신고 등록증을 게시(揭示)해 두고 마치 합법적인 화장장업을 하는 업체인 양 가장하 여 반려인들을 기망(欺罔)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이사실을 인지하게 된 반려인들의 심적 고통은 배가되고 또한 합법적 인 동물 장묘업체의 영업적인 피해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생존 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할인 경쟁을 시작하였다.

향후 이러한 불법 장묘업체들의 영업 행태를 막지못하면 국내의 20여 년간 발전해 온 반려동물 장묘산업은 크게 후퇴될 수 밖에없다. (경기 김포지역 5개 동물장묘업체 대표 인터뷰)

또한 같은 지역에 많은 반려동물 장묘업체들이 생기다보니 동물병원을 상대로 한 소개비(리베이트)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동물장묘 업체에 연결해주면 5만 원 가량을 소개비(리베이트)로 주고 있었는데 경남권에서는 최 근 과당경쟁으로 10만 원까지 주고 받고있어 장묘업체들이 2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반려동물장례협회 소속 부산, 경남권 동물장묘업체들 대표 인터뷰)

이러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거래는 건전하게 육성되고 발전해 나가는 반려 동물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높아 행정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상호 연결되어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조기에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러한 리베이트 거래 동물병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비롯, 수의사 면허정지 및 면허 취소 등의 구체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경남 김해시 및 경기도 김포시, 광주시와 같이 동일지역에 반려동물 장묘업체들이 밀집하여 서로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인근 동물병원을 상대로 불법리베이트거래, 불법 중계 업체와의 협업 등의 부정적 현상을 예방하고 동물장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양육률 및 사체 발생률에 따라 동물장

묘 업체의 신규등록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동물의 지위에 맞는 묘지에서의 매장의 허가이다.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사체의 매장은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앞에서 외국의 동물장례를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화장뿐만 아니라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동물묘지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사람도 반려동물과 같은 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묘지도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은 단순한 객체이고 사람은 주체이다'라는 이분법적 개념에서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제3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 동물묘지에서의 매장의허가, 그리고 이 묘지를 보호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봉안시설도 '동물전용의 봉안시설' 개념에서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봉안시설'로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셋째, 동물장묘 업체에서의 '화장증명서' 발급과 '등록말소'업무대행 법제화이다.

현재는 동물병원 등에서 월령 2월부터의 반려견을 상대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많은 반려인이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등록하고 있으며, 말소업무도 마찬가지로 동물병원에서 대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등록된 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동물장묘 업체에서 반려동물 화장 시 '화장증명서'의무 발급과 '등록말소'업무를 등록된 화장시설을 갖춘 동물장묘 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게되면 전국의 반려동물 불법 화장장 난립과 이용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서울경기지역에서 화장시설 없이 인터넷 광고만으로 전국 지점망을 갖춘 대형 반려동물 장묘업체 행세를 하는 불법 대행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 제4장 반려동물 장묘행정 현황 분석

## 제1절 반려동물 장묘의 사회문화적 인식실태

#### 1. 반려동물 장묘에 대한 인식실태

무허가 동물장묘 업체의 불법화장 실태에 대한 TV 보도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로 구분지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식 전환기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동물장묘업에 대한 뉴스와 보도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상조매거진, http://www.sangjomagazine.com/ index.html, 2015. 3.2.).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가 대두된 것은 기존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방식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 외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들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반려인·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생활 쓰레기나 의료 폐기물로 간주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반려동물 사후처리 방안으로써 반려동물의 화장 및 장례절차가 떠오르고 있다. 많은 반려인이 장례식을 통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길 원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300명 중 55.7%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파트라슈의 박희복 실장은 "반려동물의 죽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반려동물의 장례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부대신문 press@pusan.ac.kr, 2020.10.12.).

황규성 외(2015)41)의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

<sup>41)</sup> 황규성, 이충구, 김두성, 김성민, 김정래(2015)는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66명을 대상으로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현재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르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키우는 사람의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30대, 10~20대 순서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또한 종교 유무와 종류에 따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무교 순서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긍정적 인식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40대 이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짐을 알 수 있었고, 모든 경우에서도 부정적 인식은 매우 적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인식조사 결과에 의해 국내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 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반려동물 장례 인식조사의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동물장례에 대한 인식 실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동물장례에 대한 인식 분포

Classification	Positive(N=173)	General(N=66)	Negative(N=27)	P-value
Pet animal				
breed	85(77.27)	21(19.09)	4(3.64)	<0.001
no breed	88(56.41)	45(28.85)	23(14.74)	
Sex				
male	74(67.27)	22(20.00)	14(12.73)	0.210
female	99(63.46)	44(28.21)	13(8.33)	
Age				
10~29years	94(62.25)	45(29.80)	12(7.95)	0.033
30~39years	12(50.00)	7(29.17)	5(20.83)	
over 40	67(73.63)	14(15.38)	10(10.99)	
Religion				
Christianity	48(62.34)	20(25.97)	9(11.69)	0.036
Catholicism	39(84.78)	3(6.52)	4(8.70)	
Buddhism	20(71.43)	6(21.43)	2(7.14)	
None	66(57.39)	37(32.17)	12(10.43)	
Marital status				
married	69(71.88)	15(15.63)	12(12.50)	0.030
single	104(61.18)	51(30.00)	15(8.82)	

※ 자료: 황규성 외(2015)

먼저 동물장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77.27%, 키우지 않는 사람은 56.41%로 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더 높은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키우지 않는 사람은 14.74%, 키우는 사람은 3.64%로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수치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결혼 유무에 따른 인식도 조사에서 기혼자가 71.88%, 미혼자가 61.18%의 분포를 보이며,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부정적 인식에서도 기혼자가 12.50%, 미혼자가 8.82%의 분포를 보여, 부정적인 인식 또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인식도 조사에서 40대 이상 연령에서 73.63%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가장 높은 분포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10대에서 20대 연령은 62.25%, 30대 연령은 50.00% 순이었다. 30대 연령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동물장례에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40대 이상이 동물장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은 높았으나, 10대에서 20대 연령에서 부정적 인식이 다른 연령 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별 인식조사에서 천주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이 84.78%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불교가 71.43%, 기독교 62.34%, 무교 57.39%로 다른 종교에 비해 무교를 가진 사람들이 동물장례에 대해 긍정도는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11.69%가 부정적 인식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였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표 4-2> 반려동물 장례의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요인

Classification	Positive(N=173)	General(N=66)
Pet animal no breed breed	1 2.63	1.52-4.54
Sex		
female male	1.18	0.71-1.98
Age	4 05	0.00.000
10~29years 30~39years	1.65	0.69-3.92
over 40	2.79	1.11-7.05
Religion		
None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ism	1 1.23 1.86 4.14	0.68-2.22 0.76-4.56 1.71-10.0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 1.62	0.94-2.79

※ 자료: 황규성 외(2015)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2.63배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OR=2.63, 95% CI 1.52-4.54), 남성이 여성에 비해 1.18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OR=1.18, 95% CI 0.71-1.98)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30대에 비해 40대 이상자가 2.79배 긍정적 인식으로 판단되었다(OR=2.79, 95% CI 1.11-7.05). 무교에 비해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독교는 무교에 비해 1.23배 긍정적 인식으로 판단되었고(OR=1.23, 95% CI 0.68-2.22), 천주교는 무교에 비해 4.14배 긍정적 인식으로 판단되었다(OR=4.14, 95% CI 1.71-10.02).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1.62배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OR=1.62, 95% CI0.94-2.79).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반려동물 장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먼저 동물이 죽게 될 경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해 반려인들은 장묘시설이용 61.8%, 매장 25.6%, 동물병원에 사후처리 부탁 11.7%, 마지막으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가 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반려인의경우 장묘시설이용 51%, 동물병원에 사후처리 부탁 31%, 매장 17.6%, 일반 쓰

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 0.4%이었다(김정연 외, 2018)<sup>42)</sup>. 반려인이 비반려인에 비해 장묘시설이용 계획이 10% 정도 높았고 매장을 보다 선호하였고 동물병원 사후처리계획이 뚜렷이 낮았다. 반려인들은 가족같이 생각하고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폐기물이 아니다 98.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폐기물이다 1.9%로 뒤를 이었다(김정연 외, 2018). 이 같은 결과는 현재 폐기물 또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는 현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당연하다 58.6%, 생각해 본 적 없다 (잘 모르겠다) 38.1%, 이해할 수 없다 3.3%로 나타나는 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과반수 이상으로 긍정적이다(김정연 외, 2018).

이상의 반려동물 장묘에 대한 인식실태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 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규성 외, 2015).

#### 2.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실태

김정연 외(2018)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 장묘시설 입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778명이다.

이 조사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동물장묘 시설이 입지할 경우 많은 반대의견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찬성 85.1%, 반대 14.9%로 나타났고,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56.9%로 '동물복지' 항목이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32.5%가 응답한 '납골당에 안치될 경우자주 보러 갈 수 있어서'이다. 찬성 측은 자신의 지역에 동물장묘 시설이 들어

<sup>42)</sup> 김정연 외(2018)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 장묘시설 입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연구하였고, 이 연구는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778명이다.

온다면, 동물 복지적인 측면을 보아 찬성한다는 의견과 납골당에 안치될 경우 자주 보러 갈 수 있다는 접근성의 장점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37.1%로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이며 그다음으로 높게 나온 항목은 22.4%로 '정서적인 불쾌감'이다. 반대 측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정서적인 불쾌감을 이유로 반 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따라서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에 증가하면서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장묘시설의 친환경적인 측면도 부각되어야 할 것 이다.

### 3. 반려동물 장묘 인식실태의 시사점

최시영(2019)은 동물 장묘 및 장묘시설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① 고객 접근성 저하(화장시설 이용을 위한 원거리 이동, 화장장 내 정결/환경관리 미흡, 불법 화장장 및 시설운영(고객불신), 화장 등의 장례 비용 부담), ② 화장시설 부족(화장시설 부족으로장묘 및 이동 비용증가,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지역주민의 화장시설 도입 반대), ③ 동물 사체 관리/처리 부실(반려동물 사후 보관 및 관리 부실,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 횡행/환경오염, 종량제 봉투에 의한 폐기물 처리문제, 동물장례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지만 2년이 지난 2021년 5월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56개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일부 특정 지역에 화장시설이 몰려있어 과당 경쟁과 이로인한 동물병원과의 과도한 리베이트 및 불법중계 업체와의 거래, 인터넷 파워링크의 클릭 단가의 경쟁적 인상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동물장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정부의 과제로서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장묘 시설이 입지 시 주민들이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수렴하여 장묘시설의 환경을 친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준공영제<sup>43)</sup> 장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공설화장장 사례와 같이 국비 지원에 더불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 설장묘시설은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기에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임대비와 시설운영비, 홍보비 등 운영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인근 사설 장묘시설과의 경쟁을 생각한다면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상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장묘시설의 준공영 도입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사설 장묘시설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주는 대신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관리하면 공설 장묘시설에 대한 입지선정에 대한 부담과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사설 장묘시설의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의 사후 복지문제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시말해 기 설치되어있는 사설 장묘시설에 일정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지역민들에게 기본 화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고 추가되는 부수적인 장례용품만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준공영제가 더욱 현실적인 대안(代案)이다.

셋째, 동물장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동물 장묘시설 입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기준요건에 부합하면 신고등록을 받아주어야 함에도 '민원'이라는 미명아래 등록신고를 반려하는행위는 온당치 않으며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인식 개선 노력으로 반대를 위한반대의 민원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sup>43)</sup> 준공영제(準公營制):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두루 이용하는 사유물이나 사유 시설을,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것에 준하게 사업자가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제도, 다음 포털, 국어사전.

# 제2절 동물장묘업 행정관리와 행정규제

## 1.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필요성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규범의 정착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과 반려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유주들의 규범 인식은 여전히 높지 않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유통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반려동물은 대부분이 펫샵이나 지인을 통해 분양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등록이나 책임에 대한 교육 사육환경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이행률이 낮으며 반려 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재나 사육 포기 이후 과정에 대한 관 리도 요구된다(박효민·박서연, 2019).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윤리적 측면에서 동물권 보호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도 유기동물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

우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인 반려동물의 생산 및 유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 포기과정에 대한 적극 개입과 보호소 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지원 정책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박효민·박서연, 2019).

반려동물 정책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수준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중이고.

울산시는 1만 3,135㎡의 부지에 1,998㎡ 규모의 미술관을 '더불어 사는 숲속 놀이터'를 주제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 중이며, 대전시는 동물보호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시민 휴양형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건립하여 유기동물 보호 관리시설, 입양 활성화를 위한 훈련 공간, 시민과 반려동물의 쉼터 등을 구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보호 자의 동반교육이 가능한 '서울 반려동물 교육센터'를 개장하고, 광주시는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입양센터 보호 교실 등을 갖춘 반려동물종합보호센터 건립하 였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반려동물 정책이 후보자들 간 이슈가 된 바 있다. 각대선 후보자들은 반려동물의 의료, 소유주지원, 유기동물 보호, 동물권 강화 등의 내용으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표 4-3> 19대 대선 반려동물 관련 주요 공약

범주		공약 내용			
반려동물	•	동물 의료 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의료	•	참여형 공공동물 의료보험 도입(표 준수 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기 교	•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			
	• 반려견 놀이터의 확대				
	•	분양 또는 입양 시 피해구제장치 강화			
반려동물	•	• 화장장 신규 설립 시 공공 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소유주	•	• 유기동물과 독거노인/취약계층 매칭사업으로 취약계층 정신			
지원	건강 개선 지원				
	•	반려동물 행동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	반려동물 등록제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			
	•	유기동물 보호소 대폭 확충 및 지원 확대			
유기동물	•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보호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단기정책 시행			
	•	헌법에 동물권 명기 및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법 제정			
	•	동물보호국 및 동물구조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동물권	•	반려동물 학대 금지규정 강화			
강화	•	동물복지 인증 농가 지원			
	•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			
	•	개 농장 불법운영 근절			

자료: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5명, 그들의 동물보호 복지 공약은?",

데일리벳(2017.04.19.)

개 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안전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려동물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라고 말한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보다도 우선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이 일상적으

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주인이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제 등록률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려동물 안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사후대책 위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주의에 대한 경고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이 소유물이 아닌 새로운 가족으로 인식되는 이상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화 교육과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이미현. 2017).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지나친 규제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 작용이 우려되지만, 행정규제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반려동물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제도에는 동물의 권리와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 주의 책임의 범위 사회적 규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역사가 오래 된 국가의 경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 시스템 구비. 소유주가 행해야 할 법 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에 대한 규범이 미비한 상태이다.

둘째,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이 일상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즉, 반려동물 교육의무화가 필요하며, 반려동물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단위와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관련 사회현안 파악을 위한 자료생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즉 민원 범죄 상해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박효민·박서연, 2019).

## 2. 동물장묘업 행정의 현황과 과제

반려동물의 사육에는 필연적으로 반려동물 사체처리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반려동물의 사망에서 오는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가 접목되면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및 장례 등을 다루는 동물장묘업이 생겨났다.

동물장묘 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서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으로 확인할수 있다. 동물장묘업자 등록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동물장례식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적법하게 등록돼 있는지확인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보통 동물장묘 업자는 동물장례식장을 등록하기전 동물장례식장의 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근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인근 시설의 운영이 파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 지역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신은숙, 2018).

그러나 최근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 대구 서구 등은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 간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사체처리 건수도 그만큼 늘어나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장묘 시설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동물장묘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거나, 소음,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환경오염 및 토사 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신은숙, 2018).

동물장묘업에 대한 수요증가는 불법적인 동물장묘업의 난립으로 이어지고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조치는 벌금에 처하는 것 외에는 없다.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등록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등록절차의 문제보다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것과 위반 시의 불이익 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동물 사체의 임의매립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범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장은 혜, 2015).

현재 동물의 장묘 및 장묘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고 평가된다. 즉, 획일적인 고정형 화장시설(건조장) 구축을 추진하는 문제,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반려동물 합법적 폐기 가능한 문제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에의한 동물장묘 혼선 등이다(최시영, 2019).

위 논의를 기초로 동물장묘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취급자에 따라 이원적 규 제가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은혜, 2015).

둘째,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의 허용 등이다. 일반적인 임의매립에 대해서는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반려동물 사체 매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연장의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물장묘 시설 관련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동물장묘업의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일 수 없으며, 생명 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 윤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사체처리와 관련한 환경적 기준의 엄격화와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분쟁조정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단순히 영업수요자의 관점에서 등록기준 등을 완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동물장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보다는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장은혜, 2015).

넷째, 준공영제 동물장묘 시설 설치 확대를 검토하여야 한다. 2016년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공설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창원, 임실, 김해, 용인, 제주도에서는 실제 공설 장묘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 등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지역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지역민들과 충돌하여 지금까지 공설 장묘시설을 갖춘 곳은 임실군이 유일하다. 하지만 임실군에서도 공설 장묘 시설을 완공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실제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현 반려동물 장묘산업의 특성을 간과하여 발생한 일이라 할 것이다.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민의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는 현재의 대 안은 동물 장묘시설의 준공영제 도입이 대안(代案)이 될 것이다.

동물장묘업 행정의 가장 큰 과제는 불법 장묘시설의 뿌리를 뽑는 것과 동물 병원과의 리베이트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56개의 등록된 사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존재하며 짧은 시간에 급속히 증가된 이 시설들의 운영은 상호 간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과도한 리베이트와 홍보비 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다가 불법 장묘시설이 도심지역으로 파고 들어와 상대적으로 시외 변두리 지역에 있는 등록된 사설 장묘시설들의 운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행정력과 사법기관의 경찰권이 힘을 합해 이에 대한 단속으로 반려 동물 장묘산업을 육성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설 반려동물 장묘시설들의 상호 간의 경쟁을 이용하여 화장비용의 50%까지 소개비로 요구하는 동물병원들의 횡포 또한 강제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이제 막 자리 잡아가며 발전하는 반려동물의 장묘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불법 장묘시설들과 동물병원들의 횡포로 인하여 일부 장묘시설들은 화장 비용을 크게 내리고 이들과 경쟁하는 등 반려동물 장묘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김포 펫해븐 대표 인터뷰)

# 3. 동물장묘업 행정관리와 규제

이하에서 동물장묘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와 규제 측면에서 고찰한다.

1) 동물장묘업 영업 종류 및 시설·검사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기술되어있으며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제32조 1항 1호이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 8가지 항목 중 1호가 동물장묘업<sup>44)</sup>이다.

<sup>44)</sup>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동물장묘업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업군으로 나뉘는데 첫째,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둘째, 동물화장(火葬)시설 또는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셋째, 동물전용의봉안시설로 분류된다(이하 이를 장례식장업, 화장업 또는 건조장업, 봉안당업으로 칭한다).

반려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sup>1.</sup>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sup>2.</sup> 동물판매업

<sup>3.</sup> 동물수입업

<sup>4.</sup> 동물생산업

<sup>5.</sup> 동물전시업

<sup>6.</sup> 동물위탁관리업

<sup>7.</sup> 동물미용업

<sup>8.</sup>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8. 21.>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관련)

###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2. 개별 기준

# 가. 동물장묘업

- 1)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 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나)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다)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 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 해야 한다.
-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4) 동물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3. 22.>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0. 8. 21.>

#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 1. 공통 준수사항

- 가. 영업장 내부(동물운송업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다)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마. 영업장이나 동물 운송 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 개수 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 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 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차.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해 야 한다.
-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개별 준수사항

### 가. 동물장묘업자

-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 2) 동물의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 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 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 7)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하 나~아 생략) 나. 동물판매업자 다. 동물수입업자 라. 동물생산업자 마. 동물전시업자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사. 동물미용업자 아. 동물 운송업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농림 축산식품 부고 시 제2016-5호]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 위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검사의 종류

검사는 다음과 같다(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농림 축산식품 부고 시 제2016-5호] 제2조).

- (1) "설치검사"란 동물장묘 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를 말한다.
- (2) "정기 검사"란 동물장묘 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자가검사"란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동물장묘 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동물 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농림 축산식품 부고 시 제2016-5호] 제3조).
- (1) 동물화장시설의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학, 정부 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2) 동물건조장시설의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외에 동물화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화장시설의 자가검사 방법 및 기준,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검사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농림 축산식품 부고 시 제2016-5호] 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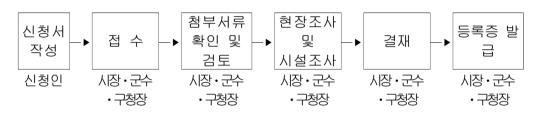
# 2) 동물장묘업 등록, 변경 및 휴폐업

# (1) 동물장묘업 등록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할 때에 각기 장례식장업, 화장업, 봉안당업 등 세 가지 모두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화장업의 등록 신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장례식장업 또는 봉안당업 중 한 가지의 영업 사항만을 등록 신고할 수 있다.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려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아래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이 첨부 서류들은 ① 인력 현황, ②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③ 사업계획서, ④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⑤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45)이다. 위의 ④ 시설기준은 화장로 시험성적서로 갈음하면 된다. 동물장묘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이었을 때 '설치 승인서' 제출이 요구되었지만 2016년 1월 21일 폐지되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5호 삭제).



<그림 4-1> 반려동물 장묘업 영업등록신청서 처리절차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46)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한다.47)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sup>45)</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1항에 1호~6호까지 포함,

<sup>46)</sup> 전자정부법[법률 제17962호]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47)</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2항 7호~8호

# (2)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 영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등록변경 대상 사항은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시설 4. 영업장의 소재지이다.

이렇게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등록증과 영 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사업 계획서와 시설기준 서류,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3) 동물장묘업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

동물장묘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있다.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록 영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사항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제4항).

①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 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sup>48)</sup>
  - 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48)</sup>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1.</sup>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sup>3.</sup>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sup>4.</sup>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1.</sup>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up>3.</sup>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up>3</sup>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sup>4.</sup>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1.</sup> 유실·유기동물

<sup>1.</sup>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 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 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 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up>2.</sup>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 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sup>3.</sup>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sup>4.</sup>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49)

나.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5) 동물장묘 시설 설치 불가지역

동물장묘 시설 설치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은 불가한지역으로서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인가 밀집 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농림지역, 산업 지역, 주택가에는 들어설 수 없으며 이외의자연녹지, 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설치할 수있다.

또한,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이어야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2호]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는 동물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sup>49)</sup>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03호]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sup>1. 「</su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

<sup>2. 「</sup>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up>3. 「</sup>문화재 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up>4.</sup> 그 밖에 대통령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로 정하는 지역

# (5) 행정기관의 동물장묘업 관리

동물장묘업 관리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질병 관리부의 동물보호과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보호과는 1. 동물보호 · 관리에 관한 정책 · 제도의 개발 · 연구 2. 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 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 · 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 감시관 · 명예 감시관 제도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 · 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 · 시험 · 연구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제14조).

그러나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동물장묘업의 각종 신고 및 처리업무는 지방자 치단체가 담당한다.

# ① 반려동물사체의 인도적 처리 등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2조). 반려동물 사체의 처리에 대하여 뒤에서 폐기물관리법과 연계하여보다 자세하게고찰한다.

정부는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14) 25 → ('16) 31 → ('18) 42, 유기동물 입양지원, 구조·보호비 등 운영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2020, 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 제1항 관련)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15조).

# ② 공설 동물장묘 시설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공설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공설 동물장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3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33조의3).

# ③ 동물보호 감시원·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동물장묘 시설 감독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 원 중에서 동물보호 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 중 하나가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 2. 12] [대통령령 제31436호]) 제14조 제3항 6의2).

이외에 동물보호 감시원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동물 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맹견의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지도·감독 및 개선 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감독,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을 하거나 반려동물생산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50), 동물보호명예 감시원에 대한 지도,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등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 2. 12] [대통령령 제31436호])제14조 제3항).

2020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감시원 등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감시원은 413명으로, 9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62%), 반려견 미등록(15.2%),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7.7%) 등이다.

<sup>50)</sup>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sup>1.</sup>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sup>2.</sup>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sup>3.</sup>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sup>1.</sup>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sup>2.</sup>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sup>3.</sup>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sup>1.</sup> 출입ㆍ검사 목적

<sup>2.</sup> 출입 · 검사 기간 및 장소

<sup>3.</sup>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sup>4.</sup>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sup>5.</sup> 제출할 자료

<표 4-4>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 (단위 : 명, 건)

	시·도 감시원수	백분율 (%)	위반처분실적									
시·도			계	동물 미등록	동물관리 미이행	영업 미등록	동물 학대	유 기	기 타			
서울	56	13.6	122	4	76	15	2	2	23			
부산	25	6.1	42	5	25	3	3	1	5			
대구	8	1.9	26	0	16	2	6	0	2			
인천	13	3.1	71	4	55	4	2	1	5			
광주	6	1.5	14	4	7	1	1	2	-			
대전	12	2.9	75	61	8	1	1	1	3			
울산	8	1.9	6	1	4	1	-	0	-			
세종	4	1.0	4	0	2	_	-	0	2			
경기	104	25.2	221	21	124	33	13	11	19			
강원	34	8.2	29	1	20	_	5	0	3			
충북	14	3.4	10	1	6	-	1	0	З			
충남	23	5.6	43	1	21	2	1	0	18			
전북	21	5.1	17	1	14	2	-	0	-			
전남	23	5.6	93	39	53	1	1	0	-			
경북	27	6.5	148	0	140	1	3	1	3			
경남	26	6.2	41	4	29	7	1	0	_			
제주	9	2.2	21	2	9	4	2	1	3			
계	413	100	983	149	609	76	40	20	89			
71		100	100(%)	15.2	62.0	7.7	4.1	2.0	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 태조사 결과

이에 더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sup>51)</sup>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sup>51)</sup>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 명예감시원) 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이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동물보호 감시원의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동물장묘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이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농림축산 식품 부장관이 위촉한 경우는 전국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는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36호] 제15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인원은 517명이며 주요 활동은 동물보호 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이며 전체 활동실적이 2.899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현황

(단위 : 명)

7 🗆	합계	서	부	대	인	광	대	윒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十世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성	기	원	뽜	加	북	남	봐	남	주
현황	517	106	58	8	13	0	17	18	4	142	26	15	19	20	39	0	25	7
(%)	100	20.5	11.2	1.5	2.5	0.0	3.3	3.5	8.0	27.5	5.0	2.9	3.7	3.9	7.5	0.0	4.8	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 태조사 결과

<표 4-6>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현황

(단위 : 건)

7 🛮	계	교육·홍보	동물학대행위	감시원	학대받은 동물
구 <del></del>	/	상담·지도	신고·정보 제공	직무수행 지원	구조·보호
활동현황	2,899	1,920	77	809	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 태조사 결과

# ④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장묘업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장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동물보호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3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 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 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 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37조).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동물장묘업 휴업 등의 신고 처리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하여야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39조)

# 3) 동물장묘업 시설의 건축물 용도

건축법상 동물장묘업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2017년 7월 23일부터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되었다.

그 이전에는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제각기 달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련하여 신고등록 과정 에서 민원인들과 많은 시비와 소송이 오가는 등 혼란스러웠으며 님비현상의 극 도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신고등록을 반려하는 빌미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2015년도의 당시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당시에는 동물장묘시설과 관련된 시설로는 산업 등 시설군 중에서 묘지 관련 시설, 그 밖의 시설군 중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들 수 있는데 묘지 관련 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는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가 있다. 이렇듯 당시 법령의 미비가 있다 보니 기존 시설을 동물장묘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신청이 들어올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용도로 인정하였었다.

2015년 당시의 전국 18곳의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보면 동· 식물 관련 시설(6곳), 근린생활시설(5곳), 자원순환시설(4곳), 장례식장(2곳), 묘 지 관련 시설(1곳) 등 제각각이었다.<sup>52)</sup>

2016년도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장묘 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동물 장묘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정부 부처 간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동물 장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별표 153)과 같이 26호 묘지 관련 시설군에 집어넣어 법률이 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건축법에서 동물장묘 시설 중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상의 사람의 장례식장 건축 군과 같은 위 동법 1-28 장례시설<sup>54)</sup>군에 속한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sup>52)</sup> 김영순(2017). 동물장묘 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강원법학

<sup>53)</sup>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동법 제2조2항 별표 1-26호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sup>54)</sup>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동법 제2조2항 별표 1-28호.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 제3절 반려동물 장묘에 관한 법 정책 고찰

# 1. 동물복지와 장묘에 관한 법 정책

지금까지 인간은 동물들을 인간의 이익증대를 위해 이용하였다.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의 본능을 억압시키고, 동물들의 삶을 착취했다.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은 인간과 동물의생명 존중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인간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물 생명 존중은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들 모두 자연 생태계 내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김병석·김옥진, 2020).

1970년 중반부터 동물과 관련하여 동물복지 및 동물권이 등장한 이래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법안이나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동물학대와 관련한 문제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들 모두 자연 생태계 내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잘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김병석·김옥진, 2020).

법적인 관점에서 동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가 가장 기본적인 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 복지적 시각에서 다양한 법적인 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대량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육환경,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방법, 동물의운송이나 실험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윤철홍, 2012).

국내에서도 서구 법률 제도의 변화 및 인식변화에 따라서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은 동물보호법까지 제정하게 되었으나 헌법상 동물 관련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여전히 개인 소유권의 대상인 단순한 물건에 해당되어 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간 중심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인 자연환경 내지 자원으로 보호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

면서 동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박만평, 2018).

197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온 동물복지 및 동물권 운동은 40여 년이 지난 현재 다행히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 제도나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동물복지를 윤리적 소비 운동과 결합하며, 무역협정에서도 동물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동물복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동물의 종류별로 개별법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김순양, 2018).

둘째, 선진국에서는 농장 동물도 사육, 운송, 도축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나(채형복 외,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치중함으로써 밀집 사육으로 인한 가축 면역력 저하, 항생제 오남용, 가축분뇨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동물복지를 기초로 한 축산은 추가비용이 있지만, 식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윤리적 소비 추세와도 부합한다(정윤필 외, 2010). 더구나 EU와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동물복지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넷째,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동물 운동을 주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많은 대학에서 동물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인문학적 지식과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인재양성에도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김병석·김옥진, 2020).

동물복지는 동물복지권 실현, 환경보호, 건강한 먹거리, 경제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동물복지에 대한 목표정립, 법제와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서 문제가 많으며, 정책집행체계 역시 부실하다(김순양, 2018).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관련 법규 고찰

외국의 반려동물 사체처리 관련 현황 및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주차원에서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에 따라서는 반려동물 사체처리와 관련하여 앞선 부분이 많고, 법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사체처리 업자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요강, 요령, 지침 등으로 규율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 두수 당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갹출하여 지방정부에 납부, 이러한 갹출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동물소각시설 또는 동물화장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발령한 명령이 있는데, 동 명령에서는 통칙을통해 일반적으로 동 부령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장은혜, 2015).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 관련되는 법률은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 법인 '동물보호법' 외에도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등이 있다. 이외 '민법',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검역법', '폐기물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신은숙, 2018).

반려동물 사후 처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99호]과 동물보호 법[법률 제16977호]에 의해 규제받는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에 의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동물의 사체(死體)는 폐기물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하고 있는 바 비인도주의적 사체처리방법이다.

둘째, 동법 제2조 5호에 의해 동물병원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 폐기물로써 일괄소각하지만 이 역시 비인도주의적 사체처리이다.

셋째, 동물보호법 제32조 1항55)과 동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36조 1호56)에 의해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동물장묘 시설에 대한 주민반감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57)

<표 4-7> 법규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처리 절차

	,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처리기준	현실태
	2조 1호, 폐기물'의 기준 명시	쓰레기 종랑제 봉투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2조 5호, '의료 폐기물'의 기준 명 시	일괄소각	폐기물
	3조 9호 동물보호법에 의한 폐기 물의적용 배제기준 명시	-	_
동물 보호법	32조 1항,'동물 장묘업'	화장	화장

※ 자료: 최시영(2019)의 자료 재구성

<sup>55)</sup>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sup>1.</sup>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sup>2. ~ 8. (</sup>생략)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sup>56)</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sup>1.</sup>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전용의 봉안시설

<sup>2.~ 8. (</sup>생략)

<sup>57)</sup>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up>1. ~ 8. (</sup>생략)

<sup>9. 「</sup>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 묘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 (생략)

동물의 사체(死體)는 폐기물관리법[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제2조(정의) 1호와 5호58)에 의해 폐기물(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또는 동물병원 사체는 의료 폐기물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폐기물관리법 제3조1항 9호).<sup>59)</sup> 동물장묘 시설에서의 화장이나 건조장을 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적용 예외의 계기가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충북 제천의 한 동물장묘시설에서 폐기물 관련 설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천시에서 동물장묘 시설 신고등록을 반려하였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소송 및 법제처에 질의로, 2015. 1. 20.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제처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위해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동물장묘업에서 화장 등 사체를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으며 2016. 1. 21.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2015. 1. 20.)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2016. 1.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 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 할 수 있다. 이때 설치기준 환경부담과 님 비정서를 감안하여 배출가스관리, 시설점검 등 중요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준용하였으나 설치 승인서'조항은 폐지되었다.

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이므로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sup>58)</sup>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澤),오니(汚泥),폐유(廢油),폐산(廢酸),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2조 5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sup>59)</sup>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99호] 제3조(적용 범위) 1항 9호에 동물보호법에 의한 폐기물의 적용 배제 기준 명시되어 있다.

문거나 화장할 수 없다.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 되어진 동물장묘업(제32조 1항)은 장묘업의 허가만을 다루고 있고,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반려동물장례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최시영, 2019). 반려동물의 사육증가 및 인식변화는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까지 영향을 끼치게되는데 우리의 법제적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 동물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통한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은혜, 2015).

# 제4절 반려동물 장묘산업관리

# 1. 반려동물산업 현황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독신자들, 외동 아이(독자), 자식이 없는 부부들, 이혼한 사람들에서 반려동물의 이용 정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애완동물을 위한 장례식, 무덤, 묘지 및 추모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매년 두 자리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E. Kenney,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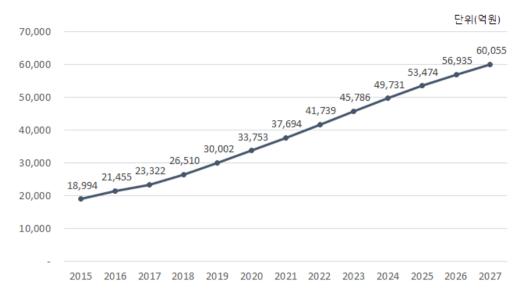
정부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사육인구와 연관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길러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조재성 외(2018)의 연구<sup>60)</sup>에 의하면 연도별 반려동물 관련 신규 시장규모는 2018년 1,857억 원에서 2023년 2,357억 원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장규모는 2018년 1조 5,441억 원에서 10년 후인 2027년에는 3조 4,979억 원까지 증가하고, 2031년에 이르러서야 시장 포화점(4조 4천억 원)에 근접한 4조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생산, 분양, 유통, 사료, 용품, 수의, 진료, 약품, 보험, 미용, 휴게, 보관, 장례 등 매우 다양하며, 개별 산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9.4%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2019년 현재 약 3조 원에서 2027년 최대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효민·박서연, 2019). 산업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는 점차 고급화,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up>60)</sup> 조재성 외(2018)는 지난 10년 동안 4회에 걸쳐 시행된 반려동물 사육현황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와 마릿수를 추정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림 4-2>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향 연구

반려동물의 증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증가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됨은 물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이른바 펫코노미(Pet+Economy) 역시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판매 교육훈련 반려동물의 사료와 용품, 미용, 치료, 보험, 장묘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의 전생애에 걸쳐 폭넓게 연관되어있다. 반려동물 전용 브랜드가 출시되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가 반려동물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박효민·박서연, 2019).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와 펫코노미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의 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적절한 제도마련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며, 반려동물의특성상 그 자체가 상품이면서 동시에 생명체이므로 일반제품의 유통 및 소비구조와 다른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산업 중 장묘산업 또한 크게 발전될 것이다. 즉, 향후 국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므로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 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를 현 허가받은 동물장묘 업체의 수로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공 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화된 반려동물 전문 인력양성 등 수급계획을 세워 야 할 것이다(황규성외, 2015).

# 2. 장묘산업의 발달과정

# 1) 국내 반려동물 장묘산업의 시작

반려동물의 양육에는 필연적으로 반려동물의 사후 사체 처리문제가 수반될수 밖에 없다. 국내의 반려동물 장묘업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업 시장이 이미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뉴욕의 하츠데일 동물묘지는 이미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의 반려동물 장묘업의 효시는 1999. 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에서 문을 연 페트나라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사람의 화장률도 33.7%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화장 문화가 국민들의 감성과는 괴리가 많은 시점으로 심지어는 '화장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야'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던 시대였다.

계속해서 1999. 10. 경기도 광주 오포읍 소재에 (구)아롱이 천국(현 21그램)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1999년도에 경기도 김포시와 광주시에 동물장 묘업의 기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경기도 화성시 소재에 동물장묘업체 강아지넷이 들어서고, 2004년 김포시 소재 (구)월드펫(현 하이루)이 들어섰으며, 2005년 김포시소재 엔젤스톤, 2008년 부산의 파트라슈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국내의 1세대 동물장묘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국내의 반려동물 장묘업(화장)은 시작이 되었지만 법률적인 체계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주관하는 정부 부처도,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1세대 동물장묘 업자들의 영업은 시작되었다.

처음 영업은 단순히 관할 세무서에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라는 종목으로 사업

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도 동물보호법이 시작되면서 정식으로 동물장묘업이 법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 2) 초기(1세대) 반려동물 장묘산업

농림축산식품부(2017)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해 약 15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으며, 기르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59.9%에 달했다.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불법으로 땅에 매립하거나, 동물병 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로 소각하는 기존의 방법 대신 반려동물의 죽음을 소중 한 사람의 죽음처럼 여기고 애도하는 문화가 발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이 대부분 인간보다 짧기 때문에 반려동물 상실은 반려인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으로 겪게되는 사별의 형태이므로 반려동물 애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정민지, 2018).

2000년대 초반의 반려동물 장묘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 되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개(pet)가 대부분이었다. 초기의 반려동물의 사후 그사체는 대부분 매장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였고, 또는 동물병원에 사체를 위탁하여 병원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였다.

1세대 동물장묘 업체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김포시에 3개 업체, 화성시에 1개소 업체, 부산광역시에 1개 업체가 자리하였 다.

동물 장묘업체들은 국내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영업권을 염두에 두었지만 서울로 입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 에서 차선책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김포시와 광주시를 선택한 것이다.

<표 4-8> 1세대 동물장묘업체 분포표

설치 년도	동물장묘업체	소재지					
1999. 7.	페트나라	경기도 김포시					
1999. 10	아롱이 천국	경기도 광주시					
2000	강아지넷	경기도 화성시					
2004	월드펫	경기도 김포시					
2005	엔젤스톤	경기도 김포시					
2008 파트라슈		부산광역시					

현재에도 경기도 김포시에는 5개의 동물 장묘업체가 몰려있고 경기도 광주시에는 6개의 장묘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 지역에서의 반려인들은 자신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사후에는 그 사체를 마땅히 처리할 시설이 없어 사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충청 권이나 전라권에서 몇 시간의 거리를 이동하여 경기도의 장묘업체를 방문할 수 밖에 없었다. 타 지역에 있는 반려인들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2013년도까지의 국내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1개소가 늘어 7개소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장묘 시설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시 각 장묘업체의 시설을 살펴보면 1~2대의 화장로를 이용하여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데 대략 개 한 마리의 사체를 화장하고 다시 다른 개를 화장하기 시작 하기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각 업체의 처리능력을 계산해보면 1개 업체당 화장률은 최대 15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7개 업체의 처리능력은 1일 100마리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반려동물 사체는 무분별하게 불법매장이나 생활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그 이유는 반려동물 장묘업체와의접근성과 시설 부족, 그리고 동물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었다고판단되어 진다.

초기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 등의 반려동물이 사망하여 그 사체를 화장하고 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개 문상도 오느냐'라는 등의 놀림의 대상이 되어 반려인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다 보니 또 다른 심리적인 폐해가 발생하였다.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펫로스 증후군61)이라고 한다.

실제 2012년 부산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사망하자 자살에 이르렀던 사례가 있으며, 2016년도 대전 동구 용운동과 2020년도 대전 서구 흑석동에서도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펫로스 증후군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강아지를 화장한 지 일주일만에 자살한 사례가 있다.(대전 서부경찰서 형사 인터뷰)

# 3) 현재의 반려동물 장묘산업

1991년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62)라는 취지로 국내에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전후로 해외 동물보호 단체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 제도를 문제 삼는등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제정된 관계로 법조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 단체 등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새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등 위법행위 시 처벌규정 또한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의 반려동물 장묘업에 관한 법률도 이때 처음 제정되었다. 그때까지의 1세대 장묘 산업체들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無主空山)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체계하에서 제멋대로 영업을 자행하였던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sup>61)</sup> 펫로스 증후군(Animal Loss, -症候群)은 개, 고양이 등 각종 반려동물들이 죽거나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을 당하게 하고 있는 시점부터 생겨난 상실감을 계기로 일어나는 각종 질환 및 심신 증세를 말한다. 주요 증세를 살펴보면, 좀 더 잘 돌보지 못하게 되는 죄책감을 필두로 하여 반려견 및 반려묘 등과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다양한 이유를 가진 죽음의 원인들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슬픔의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우울함을 겪는 우울증이다. 이와 같이 펫로스 증후군은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속하게 되며, 심할 경우 자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출처: 위키백과, 최종검색: 2021.5. 7

<sup>62)</sup> 동물보호법 제1조 목적

각종 메스컴에서 동물장묘 시설에서의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검은 매연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도하면서 법률적인 강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을 경계하던 시기로 검은 연기가 나오는 반려동물 화장장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단독화장을 한다고 하고는 한 번에 7~8마리의 강아지 사체를 넣고 집단화장을 하다가 적발되어 동물장묘 산업 전반에 불신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으며 결국 해당 업체는 1세대부터 동물장묘 산업을 계속해오다가 중도에 사업자와 회사명이 바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후 반려동물 장묘 사업 중 화장장 설치는 폐기물관리법의 저촉을 받으며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만 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동물장묘 산업의 독소 조항이 되어 동물장묘 산업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건축법상 장묘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기 동물장묘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를 달리하는 등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반려 동물 화장장은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축법상 동물장묘 시설도 별표1-26호 묘지 관련 시설로 지정되고 동물전용장례식장은 별표1-28호로 건축물 용도가 정해지자 법적, 행정적인 혼란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국내 경제 상황이 크게 발전하는 가운데 2021년 4월 현재 국내의 1인 가구가전체 가구 수의 39.5% 늘어가고<sup>63)</sup>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문화적인 형상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반려동물의 문화가 생겨나고 해마다 반려동물 분양시장과 함께 사료 산업, 미용업, 등반려동물 산업이 급신장세를 보이면서 관련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동물장묘 시설도 이에 맞추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1인 가구는 최근 몇 년 새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는 913만 9,287명이다. 전체 가구의 39.5%인데 역대 최고치다. 이 중 20대와 30대 초반 1인 가구의 증가세가

<sup>63)</sup> 세계일보 2021. 5. 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는 913만9287명이다. 전체 가구의 39.5%인데 역대 최고치다. 이 중 20대와 30대 초반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도드라진다. 지난해 20~30대 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도드라진다. 지난해 20~30대 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그림 4-3> 1인 가구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이에 동물보호법도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불법적인 처벌 조항은 대폭 그처벌이 강화되어지고 반려인들의 사육문화와 동물과의 공존을 기치로 내세우는 문화가 형성되어 동물보호법 1조의 목적에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이라는 문구를 넣어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반려'의 참뜻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동물장묘 산업에 있어서는 풀리지 않는 또 다른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민원'이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지역 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인 ' 님비현상'은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동물장묘 시설이 건축법상 '묘지 관련 시설'로 구분되어지다보니 건축물 허가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면사무소 등으로 통보를 해주어 지역 이장단을 통해 지역주민 전원에게 사실이 전파 되어지고 '화장장'이라는 민감한 단어에 격분한 주민들에게 한마디 가슴에 불 지르는 듯한 말 한마디면 그 순간부

터 동물장묘 시설 반대 투쟁이 시작된다.

현재 전국의 56개 동물장묘업체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주민들을 상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라며 계속적인 설득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동물장묘업 등록서류를 다시 반려받기를 수차례 거친 후 결국은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를 거쳐서 동물장묘업 신고등록을 마쳤다.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업체는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결국은 주민들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불필요한 소모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현재 동물장묘업 업체가 들어서는 평균적인 과정이다. 2015년도 이후에 동물장묘업 신고등록을 마친 업체 35개 업체를 등록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러한 소송의 단계를 거쳤다.

장묘 시장의 급격한 상업화도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국내 반려동물 장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단순 장례를 넘어 스톤(추모보석), 복제동물 등으로 사업 영역도 확대되고 있으며, 일각에선 장례 서비스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의 무게나 수의, 관 종류에 따라 비용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들고 반려동물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우울감 등을 뜻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화장한 후 나온 유골분으로 몸에 지닐 수 있는 '스톤 (추모보석)'을 만들기도 하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업체도 생겨났다. 동물의 털을 펜던트 안에 넣어 열쇠고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와 젊은 층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추모하기 위한 SNS 페이지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다. 해외에선 반려동물 복제 사업도 한창인데, 반려동물 체세포를 보내면 복제동물을 보내주는 식이며 중국의 경우 38만 위안(약 6,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램인터내셔널 2020. 7. 16.).

정부는 장묘 시장이 과도한 상업화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 제5절 반려동물 장묘행정 분석결과 종합

앞에서 반려동물의 장묘와 장묘업에 관련된 정부의 활동 즉, 장묘행정 현황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행정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종 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장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실태를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요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 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물장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장묘 시설이 입지 시 주민들의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화장시설 시험성적서 공개 등으로 우려를 불식시키 고 장묘시설 중 화장시설에 대한 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장묘시설이 2-3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나면서 현재 56개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사설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공적 기능을 탑재해 나갈수 있는 준공영재를 도입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의 공설 장묘시설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 년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고 사설 장묘시설을 이용한 준공영제 실시로 지역민 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복지혜택을 주며 동물장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 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동물장묘업 행정관리와 행정규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 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제도에는 동물의 권리와 더불어 반려 동물 소유주의 책임의 범위 사회적 규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며, 반려동물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원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단위와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관련 사회현안 파악을 위한 자료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동물장묘업 행정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물의 장묘 및 장묘업의 문제점으로 고객 접근성 저하(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원거리 이동, 불법 화장장 및 시설 운영(고객 불신), 화장 등의 장례 비용 부담), 동물 사체 관리/처리 부실(반려동물 사후 보관 및 관리 부실,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 횡행/환경오염, 종량제봉투에 의한 폐기물 처리문제, 동물장례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제도적 지원 미비(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반려동물 합법적 폐기, 동물보호법에의한 동물장묘 등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취급자에 따라 이원적 규제가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이 필요하여 동물장묘업의 대상으로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보다 포 괄적인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반려동물 사체 매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동물전용 묘지의 허용과 동물전용 묘지에 반려인도 함께 안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반려동물 장묘에 관한 법 정책을 고찰한 결과는 선진국의 동물복지제도와 행정체계 완비 및 동물복지의 윤리적 소비 운동과 결합, 무역협정에서 동물복지 의무 부과 등의 측면에서 우리의 동물복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동물 운동을 주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여야한다. 동물복지는 동물복지권 실현, 환경보호, 건강한 먹거리, 경제적 측면 등다방면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목표 정립, 법제와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서 문제가 많으며, 정책집행체계 역시 부실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 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 되어진 동물장묘업(제32조1항)은 장묘업의 허가만을 다루고 있고,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 반려동물 장묘와 관련한 법 정책 노력에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 동물 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통한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적 측면에서 정부가 반려동물 장묘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반려 동물 증가와 펫코노미의 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의 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적절한 제도마련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특성상 그 자체가 상품이면서 동시에 생명체이므로 일반제품의 유통 및 소비 구조와 다른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

향후 반려동물의 수와 시장에 비례하여 반려동물 장례관련 산업 또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장묘업체들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장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과 사법권 의 일원화된 단속 매뉴얼이 요구되어 진다.

행정력의 약화와 법률적 처벌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불법이 계속 되고있는 현실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동반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물병원과의 과도한 리베이트 거래도 강력한 행정력과 사법권을 동원 하여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 을 육성하고 지키는 것이다.

# 제5장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반려동물의 양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후처리 실태와 합법적, 합리적 처리라 할 수 있는 동물장묘업을 중심 분석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후처리 전반에 대한 장묘행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반려동물 장묘 및 장묘업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지만 관련된 선행연구가 적은 현실에서 이 연구는 탐색적이고 선구적으로 반려동물 장묘와 장묘업을 대상으로 정부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2017년 기준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연평균 사망이 68.8만 마리이고 화장 4.2만 마리, 기타 매장 등 64.6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망 시처리계획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이용 59.9%, 주거지·야산 매립 24.0%, 동물병원에서 처리 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 1.7%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볼때 반려동물이 사후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매장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사후 보관 및 관리 부실,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 횡행/환경오염, 종량제 봉투에 의한 폐기물 처리문제, 동물장례 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현실이다.

반려동물 등록 장묘업 실태를 보면 급증한 장묘시설로 인한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동물병원과의 과도한 소개비(리베이트), 인터넷 파워링크의 경쟁적 노출로 인한 과도한 광고비용 등이 문제로 부각 되고,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현 상으로 동물장묘 신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생활폐기물로의 배출 및 불법매립이 횡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등록상 영업이 아니라 동물장묘 업의 실질적인 업무인 동물화장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반려동물 장묘업체 중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이동식 화장로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재 동물의 장묘 및 장묘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고객 접근성이 낮다. 구체적으로 화장시설 이용을 위한 원거리 이동, 불법 화장장 및 시설 운영으로 고객 불신초래, 등이다.

둘째, 혐오시설로 설립을 기피하는 지역주민의 화장시설 도입 반대로 공설

및 사설 장묘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렵고 이에 시설이용 시 사설 동물장묘 시설 이 있는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제기된다.

반려동물 장묘행정 분석결과에 따라 그 개선과제를 장묘정책차원, 행정관리적 차원 및 법규정비 차원으로 나누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1. 장묘정책 차원 개선과제

첫째, 준공영제 동물장묘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의 반대로 전혀 진척이없는 공설 장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향을 기존 설치되어있는 사설 장묘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탑재한 준공영제 정책이 현실에 부합된다.

둘째, 불법 동물장묘 업체들에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다. 반려동물 산업은 동반성장하는 산업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성장가도를 달 리는 반려동물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2. 장묘 행정관리 차원 개선과제

첫째, 동물장묘 시설이 입지 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대기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게 화장시설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 여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장묘시설의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동물병원과의 불법 리베이트거래에 대한 행정관리와 단속이 요구되어 진다.

점차 성장해가는 동물 장묘산업에 있어서 장묘업체의 급증으로 발생하는 과 당을 경쟁을 이용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는 반려동 물 장묘 산업의 큰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셋째, 늘어나는 반려동물 장례 수요와 전문화에 맞추어 반려동물 장묘 인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의 웰다잉(well daying)을 지도할 반려동물 장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1명이 동물보호·복지업무를 담당하거나 타업무와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급증하는 동물장묘 수요에 대응 하여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며, 반려동물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단위와 지자체 단위의 반려동물 관련 사회현안 파악을 위한 자료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 3. 법규정비 차워 개선과제

첫째, 동물장묘 업체에서의 '화장증명서' 발급과 '등록말소' 업무대행 법제화를 하여야 한다. 등록된 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동물장묘 업체에서 반려동물 화장 시 '화장증명서' 의무 발급과 '등록말소' 업무를 화장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전국의 반려동물 불법 화장장 난립과 이용을 방지할 수 있고, 불법 대행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매장의 예외적 허용 및 자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임의매립에 대해서는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반려동물 사체 매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동물전용묘지의 허용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동물전용 묘지에 반려인도 함께 안장 할수 있는 방안과 반려동물 전용봉안당에 반려인들의 유골도 함께 안장 할 수 있는 법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취급자에 따라 이원적 규 제가 적용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따른 환경적·위생적 문제와 동물 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통한 상실감 치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 되어진 동물장묘업은 장묘업의 허가만을 다루고 있고,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장례에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외에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제도에는 동물의 권리와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 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규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연구를 통해 전국 반려동물 장묘업의 문제점과 불법 영업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반려동물의 급증과 그에 따른 장묘의 부정적 실태를 개선하여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연구는 반려동물 장묘와 장묘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장묘업 실태에 대한 포괄적 분석으로 반려동물 장묘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 고 그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병석·김옥진(2020),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 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제9권 제1호, (25-34).
- 김순양(2018).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 101-133.
- 김영미(2008). 아동의 반려동물 경험과 가족 건강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순(2017). 동물장묘 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강 원 법학. 50. 461-496
- 김정연·이현아·정다은·황윤하·김가림·고영주·유아랑·박예람·김옥진(2018), 반려 인과 비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동물 장묘시설 입지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제7권 제2호, 65-75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021.5.18.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2011), 「동물복지정책홍보집」.
- 농림축산식품부(2014),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활성화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2018). 국민 대다수 동물 보호·복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
- 모효정(2015).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 과 대처. 인간 환경 미래(15), 91-120
- 문운경·이승환(2017). 동물보호 복지 현황 및 전망. 한국가금학회 심포지움, 87-120.
- 박만평(2017),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전북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7.1, 통권 제54집, 2017.1.
- 박만평(2021), 인간과 동물의 반려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동물보호법상 반려 관계의 형성부터 종료까지를 중심으로, 東北亞法研究 第14卷 第3 號 (2021년 1월) 453-474
- 박정기(2010).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3), 25-53
- 박주은(2013). 여성의 반려견 죽음에 대한 경험.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임

- 상 간호 정보대학원 정신보건간호전공
- 박효민·박서연(2019).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경개 개발연구원, 이슈& 진단, 1-25
- 송진영(2017). 동물보호 법제에 관한 법 정책적 연구. 석사 논문, 대진대학교 법 무행정 대학원
- 신은숙(2018), 반려동물의 사후 관련 법령, 서울 : 방송문화 미디어텍, Meconomy 통권122호 (2018년 11월), 18-19
- 양창수(2014). 동물점유자의 불법 행위 책임. 『저스티스』통권 제82호, 한국법학 원. 76
- 왕승혜(2015). 프랑스 동물장묘업 관련 법제 현황. 한국법제 연구원 25-51
- 우병준(2014), 「EU 동물복지 정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철홍(2012),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정시안, 한국재산법학회, Vol. 29 No. 3, 259-282
- 이도경(2020). 반려동물 상실에 따른 애도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평택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현(2017).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공존의 방법을 찾다. 도시문제, 52(589), 48-49.
- 이서윤(2009).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대(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 이현서(2017). 중년여성들의 노화반려견 상실경험.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 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상담학 전공
- 이재상(2009).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461면
- 이종수·윤영진·곽채기·이재원 외(2019). 새행정학2.0., 서울: 대영문화사. 24면
- 이해수(2019)..반려동물 상실에 따른 반려인의 그리프 케어 (Grief Care)와 장송 (葬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 화산업학과
- 장은혜(2015). 동물장묘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 석지원 연구 15-21-②.
- 장은혜(2017). 동물장묘업의 법적 쟁점,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제4차 인도주의적 동물 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전소영(2019). 반려동물 관련 시설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건축 도시 대학원 건축설계 전공
- 정민지(2018). 성인의 반려동물 상실 경험과 복합비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조순란(2016). 반려동물 보호자 애착이 동물병원 마케팅 요인을 매개로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 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학과
- 조재성, 서강철, 김현중, 김원태, 지인배(2018),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추정 및 전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5권 제3호: 611-629
- 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2017.
- 최시영·윤귀향(2018). 알기 쉬운 반려동물관리와 장례 실무, 서울: 이비락, 197-198.
- 최아라·구혜경(2020). 반려동물 양육 소비자의 동물 등록제 인식에 관한 연구: 소형견 양육자의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392-403.
- 한민정(2020). 동물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 박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과
- 한성아(2019).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과 긍 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형 준(2016). 「가족구조 변화와 반려동물산업 변화」,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 교 대학원 경제학과
- 황규성, 이충구, 김두성, 김성민, 김정래, (2015),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 No. 4, 13-17, November 30.
- E. Kenney(2004). Pet funerals and animal graves in Japan. Mortalily. 9(1); 42-61.

Turner, W. G(2001). Our new children: The surrogate role of companion animals in womal's lives. The Qualitative Report, 6, 1-6.

日本動物葬儀靈園協會, 2017.

# <언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21. 4.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19.12.24.

내외경제 TV, 2021. 5. 3.

데일리벳, 2020. 4. 17.

스카이데일리. 2020. 6. 6.

조선일보, 2021. 3. 11.

미디어 워치, 2019. 5. 1.

세계일보, 2017. 12. 2.

세계일보 2021. 5. 8.

중앙선데이, 2020. 12. 12.

데일리벳, 2017. 4..19.

한국일보, '반려동물과 같은 묘지에 잠들다' 2017.7.4.

중부일보. 2018. 11. 11.

상조매거진, http://www.sangjomagazine.com/ index.html, 2015. 3.2.

부대신문 press@pusan.ac.kr, 2020.10.12.

램인터내셔널 2020.07.16.

# <WEB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김태호,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2019.01.30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램인터내셔널(http://www.lamb.international/news/articleView. html?idxno=928) 2020. 7. 16.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창원시 홈페이지 도시정보 https://www.changwon.go.kr/main.do

# A Study on the Funeral Administration of Companion Animal

-Focused on Funeral Industry-

Joung, Young-K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im, Heon-Man)

This study analyzed the disposal of corpses after death, which is inevitably accompanied by the rapid increase in companion animal breeding.

This study deduced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for funeral management for the overall post-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by focusing on animal funeral service, which is a legal treatment.

First,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funeral business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registration status of busines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business for 56 private companion animal funeral facilities registered in the 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f Korea.

Next, the government's activities related to the funeral service for companion animals(funeral administration) were divided and analyzed as follows. It was analyzed the status of companion animal funeral recognition from the socio-cultural level, the legal policy for animal welfare at the legal

level, the specific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funeral service for companion animals and the funeral industry, and the management of the companion animal funeral industry from the economic level. After that, improvement tasks for desirable funeral management were presented.

Current animal funeral and funeral service problems are as follows. Most pets are disposed of or buried in garbage bags as household waste after death. The reality is poor post-storage and management of companion animals, illegal dumping and illegal landfill/environmental pollution, waste disposal problems using volume-based bags, and lack of awareness of animal funeral methods.

Looking at the current state of the pet registration burial business, the cost of burial and transportation increases due to the lack of cremation facilities, and the cost of cremation and funerals is increasing as local residents avoid facilities that hate them. In addition, some companies are illegally operating animal crematoriums, which are the actual business of animal funeral services, not registered busines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pet funeral companies are operating illegally without registering with local governments, and illegally operating portable crematoriums using automobi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funeral management for companion animals, the improvement task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improvement tasks for funeral policy dimen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ject to support the installation of public animal burial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Second, a regional quota system for companion animal funeral services should be introduced. Thir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mobile funeral facility' should be reviewed. Fourth, sufficient supply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preparation for the increasing demand for funerals for companion animals. Fifth, the government must manage the funeral market so that excessive commercialization and unethical behavior do not occur, and

foster the funeral industry to develop soundly.

Next, the task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funera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reate an environment for funeral facilities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Second, an active administr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negative perception of animal burial facilities. Third, in consideration of the growing demand for funerals for companion animals, it is necessary to train specialists for funeral services for companion animals.

Lastly, the improvement tasks for the legal revision level are as follows. First, the issuance of 'cream certificate'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business should be enacted as a proxy for animal funeral services. Second, exceptions to burial and natural growth should be allowed. Thir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nd operate companion animal carcasses, which are subject to dual regulation depending on the handler, from wastes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vent unreasonably high regulation or lax regulation through proper classification of use according to the building law of animal burial facili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environmental and sanitation issues related to the handling of companion animal carcasses and the humane handling of carcass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legal animal funeral services.

Through this study, problems and illegal business practices of pet funeral services nationwide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of great help not only to companions and companion animals, but also to general residents by improving the rapid increase in companion animals and the consequent negative conditions of funeral homes.

[Key words] Pets, Animal Carcass Disposal, Animal Funeral Service, Funeral Administration. Quasi-Public Operating System